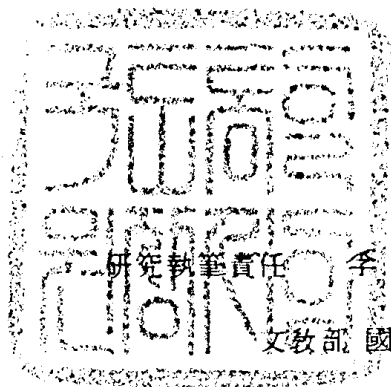


- I. 이 책자는 國土統一院의 政策調查研究計劃에 依據한 特殊課題 研究報告書임.
II. 收錄된 內容은 刊行處의 意見을 받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니며 統一問題에 關聯된 研究에 資料로 提供되는 것임.

韓末에 있어서의 中立化論

A Theory of Neutralization in the
later part of the Yi-Dynas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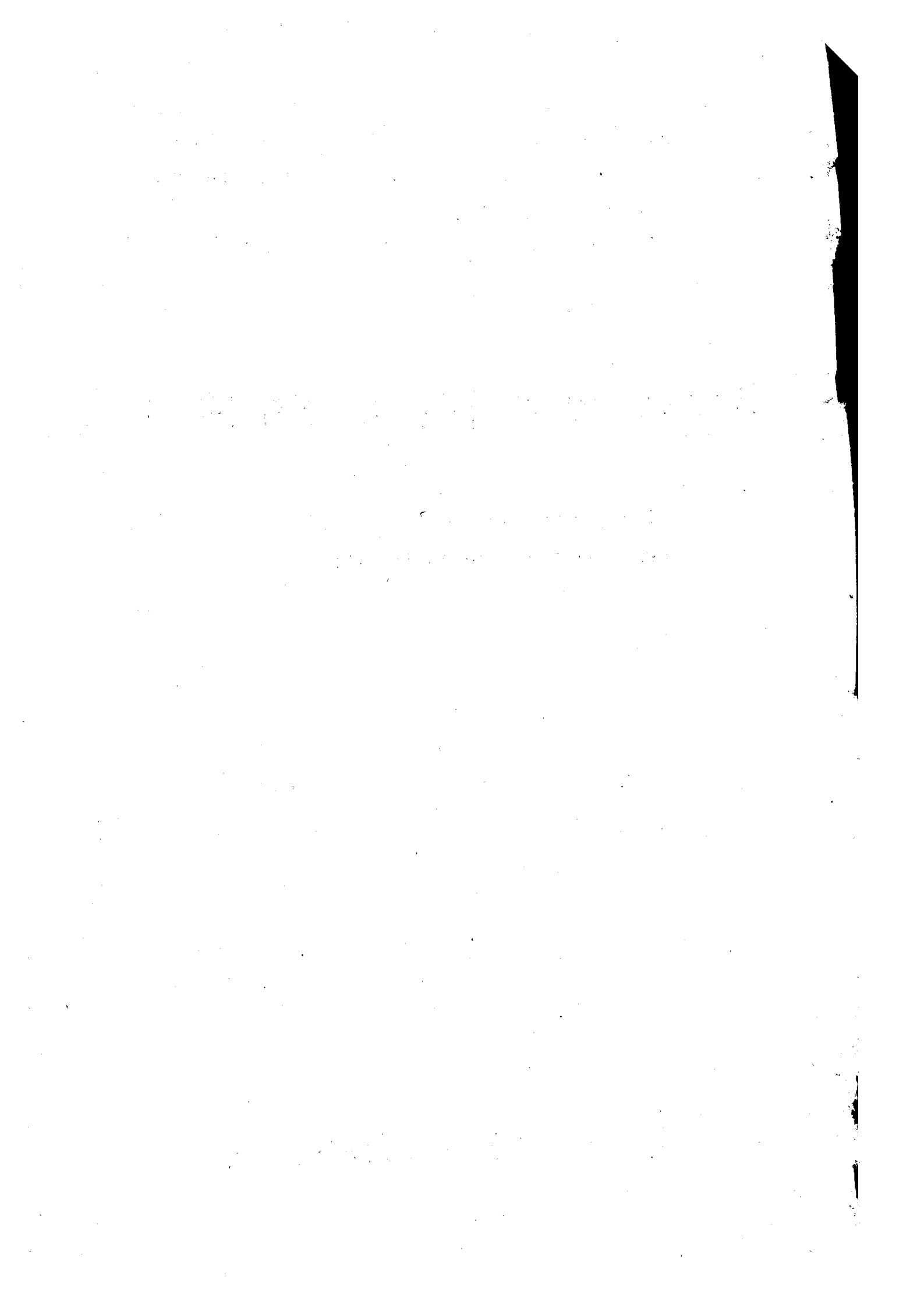


研究執筆責任 李 鉉 淙

文敎部 國史編纂委員會 編史室長

刊行責任 金 泳 植 (政策企劃室 補佐官)

國土統一院 政策企劃室



要 約

우리는 安保 自衛를 위하여 1885년 俞吉濬이 中立論을 편 일
이 있다. 이와는 달리 그후 外國에 의해서 제의된 旧韓末의 中立
論은 韓國侵略을 위한 方法論으로 日本과 러시아가 한번씩 제의
했고 韓國은 自衛의 方法으로 제의하였다. 韓國에 대한 中立論은
어느 의미에서나 우리國力의 약함을 그대로 투영해준 것이며 列強
의 侵略對象이 된 것을 뜻한다. 韓國에 대한 列強의 각축은 淸
의 東進 東侵政策, 日本의 韓半島와 滿洲侵略政策, 러시아의 極東
南下政策 속에서 전개되었다.

이때 韓國은 安全을 찾기위해 약한 國力을 보완시키는 방법으로
局外中立을 선언했으나 列強은 침략을 위한 신축성을 보이면서 처
立相을 보여 주었다. 이제 中立論의 대두 變形된 것을 단계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日帝의 韓國中立化의 企圖이다. 이는 1894년 淸日情勢가
급박해질 때 日帝는 對韓侵略政策의 일환으로, 韓淸關係의 특수성을
감안한 일제는 韓淸紐帶關係를 단절시키고 韓國을 國際社會에서 고
립시켜 놓은다음 對韓侵略에서 淸勢力을 견제하고 戰爭對象國을 淸
만으로 국한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이는 日本閣議에서 對韓政策
을 4個案으로 수립하고 그 중에서 單獨保護라는 侵略政策을 추진
한 것과 상통하는 것이다.

둘째 러시아의 韓國中立論의 제의이다. 淸日戰後 三國干涉으로

日本勢力을 위축시켰으나 侵略対象地域인 韓半島와 滿洲地域을 놓고 日露가 각출할 때 러시아는 韓國의 中立을 제의하였다. 이는 日本의 韓半島 침투를 막는 동시에 러시아는 滿洲와 韓半島까지 세력권으로 잡으려는 제의에서 나온 것이다.

이때 우리國內는 親露派가 우세한 때였으며 露日의 協商過程에서 제의되었다. 이는 日帝의 날카로운 반응과 反對에 부딪쳤으며 日本은 한결음 나아가 러시아의 極東進出을 막기 위해서 滿洲中立化로 응수하였다. 결국 두 침략자의 協商은 결렬되었지만 러시아의 제의는 韓半島와 滿洲地域을 단독으로 침투하자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세째 韓國에서 제의한 局外中立論이다. 日露協商이 결렬되고 戰爭이 필연적인 사실로 되어가자 韓國은 露日戰爭의 渦中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 局外中立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이는 日本側의 방해를 받았으며 實効를 걸우지 못하였다. 물론 侵略에 혈안이 된 日本이나 러시아가 우리의 局外中立을 지켜줄 理가 없었지만 우리는 国力이 약한 입장에서 自衛策의 한가지 방법으로 宣稱한 것이다. 그러나 国力의 뒷받침이 없어 불가능하였지만 日帝는 韓國의 局外中立을 비웃으면서 韓日議定書를 강박하여 韓國을 戰爭에 活用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日帝가 韓國의 中立宣言을 방해한 것은 韓國의 局外中立은 戰爭時 제 3국이 취한 局外中立宣言과는 성질이 다르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韓國이 바로 日本과 러시아의 対象物이기 때문에 局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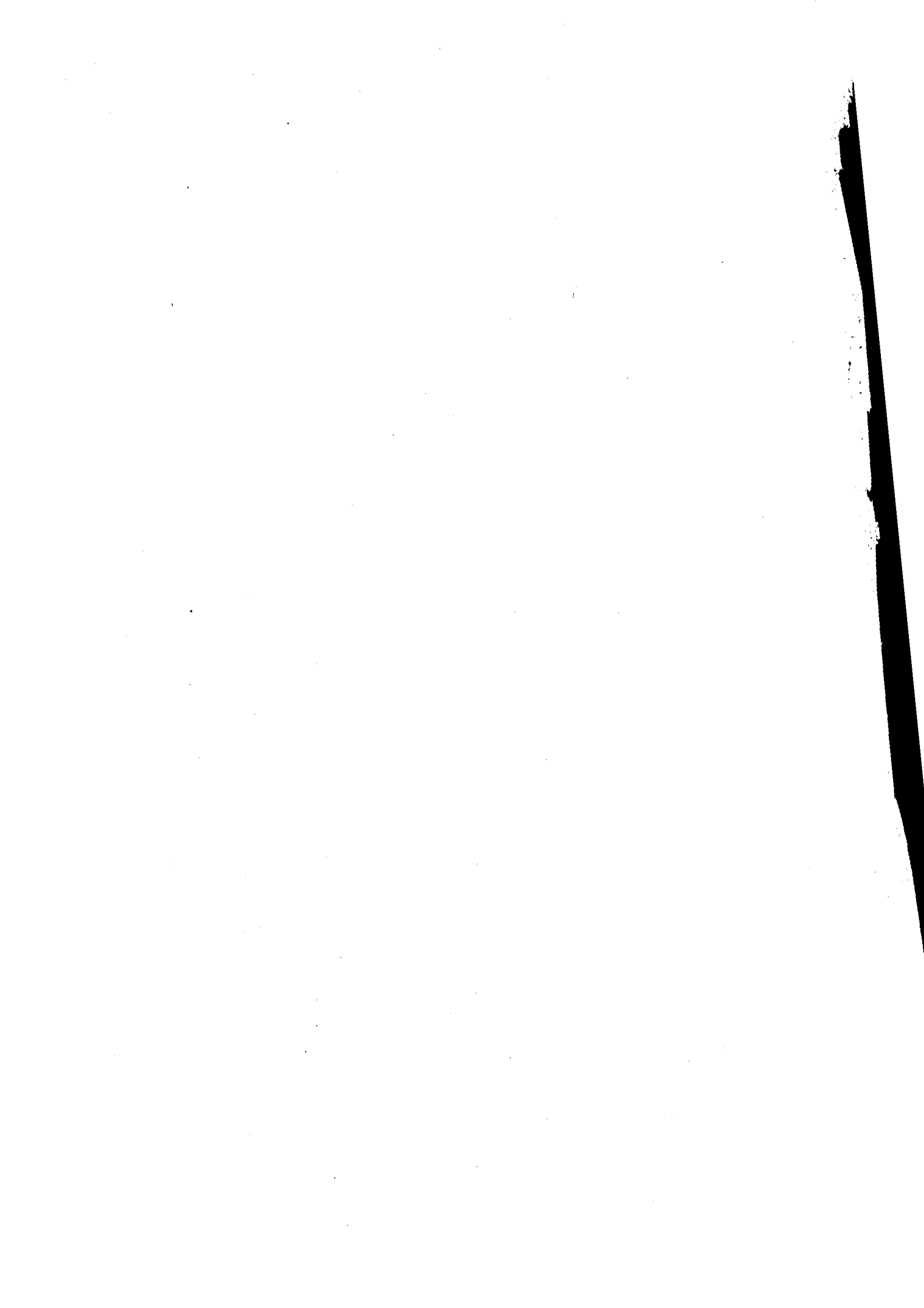
中立이 될 수 없다면 侵略対象地임을 분명히 밝히고 갖가지로 妨害工作을 펴면서 親日系 人物을 통해서 情報探索을 최대한으로 한 때문에 局外中立은 實効를 견우지 못 하였다.

이래서 局外中立이 效과를 견우지 못하자 「京城中立」으로 축소시켰지만 묵살되었고 한 때 高宗은 日本이 韓國의 局外中立을 이행하면 韓日議定書를 조인해줄 뜻까지 밝힌 경우도 있었다.

이밖에도 獨立協會에서는 列強의 틈바구니에서 벗어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中立外交論을 주장하였다. 사실 어려운 문제였지만 우리의 살 길을 찾자는 苦心에서 나온 것이다.

또다른 경우는 日淸, 露日情勢가 급박해질 때 仁川各國居留地會를 구성한 國家들은 仁川港의 中立을 모색하였으나 日本에 의해서 묵살 당하였다. 특히 日帝는 各國居留地會가 仁川港中立을 선언한 것은 日本의 軍事行動을 제약하고 방해하는 것이라면서 各國居留地會가 日本의 作戰이나 軍事行動을 방해하지 않을 때 各國居留地를 보호하겠다고 맞서면서 上仁上陸을 감행하여 戰地化했던 것이다.

위와같이 韓末의 中立化論은 性格上으로나 目的에서나 제의한 國家나 背景이 각각 다르나 基本的으로는 外勢侵略을 감당할만한 国力이 약한데서 起因한 것이다. 특히 列強의 侵略対象地化한 이유는 戰略上으로나, 軍事面에서나 중요한 곳인데서 일어난 것이다.



目 次

一. 緒言	3
二. 淸日戰爭時 日帝의 韓國中立案과 列強의 仁川中立論	5
三. 獨立協會의 中立外交論	20
四. 러시아의 韓國中立提議와 日本의 反應	26
五. 露日開戰에 대비한 局外中立宣言	40
1. 局外中立宣言內容과 日本側反應	40
2. 局外中立宣言探索하는 日帝	49
3. 局外中立宣言과 列強의 反應	61
4. 俞吉潁의 中立論과 局外中立宣言內容의 差異	65
六. 結 語	69

一. 緒

言

旧韓末에 外國이나 우리나라에서 제의된 韓國中立法論은 크게 보아 세번으로 요약된다. 첫번째는 淸日間의 정세가 급박해질 때 韓淸兩國의 協力關係를 단절시키기 위하여 日本이 취한 제의였고 두번째는 淸日戰爭後 露日角逐으로 나타나면서 러시아가 제의한 韓國中立法論이다. 이는 日帝가 滿洲中立化로 맞서 列強을 당혹시키기도 하였다. 세번째는 露日情勢가 급박해질 때 우리나라가 露日戰爭의 渦中에 휘말리지 않고 우리의 安全을 위해 우리 스스로가 自主적으로 취한 경우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궁극적으로 日帝侵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취한 조치의 하나였다.

이래서 제의된 中立論은 제의한 國家와 背景이 모두 다른 것이다. 그러나 1904년 우리政府가 취한 中立論의 제의는 1894년 淸日關係가 급해질 때 列強이 淸日에 대하여 취한 中立論과도 그 動機나 目的에 있어서 아주 다른 것이다.

이같은 中立論과 性格을 달리하는 것으로는 1894년 日本이 韓國侵略의 한 方法으로 日本閣議에서 韓國中立法案같은 것을 企圖한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獨立協會같은 경우는 中立外交論을 펴기도 하였는데 이는 1904년 우리政府가 취한 中立化論 제의의 선구적인 역할을 한 점도 있으리라 여겨진다.

어떻던 旧韓末에 3차에 걸쳐 제의된 中立化 論은 그 내용이 나 背景이나 歷史的 連繫性은 모두가 크게 다르나 어느 경우이

있 모두가 우리나라를 둘러싼 列強의 침략적인 행동때문에 취해진 조치들이었다는데 공통점이 있으며 세번 다같이 國際戰爭과 연관되는 것이고 外國이 취한 中立化論은 다같이 侵略性을 내포한 것인데 反하여 우리의 中立宣言은 自衛策의 하나로서 취해진 것인 데서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는 19세기 帝國主義 列強의 侵略경쟁이 취해질 때 제의되었던 만큼 우리로서는 주의깊게 살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미 前吉濬은 1885年 中立論을 발표하였으며 1904年 우리의 局外中立宣言과도 安保自衛面에서 연계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본고에서는 淸日戰爭 後에서 露日戰爭까지 사이에 제의된 韓國 中立化論을 中心으로 그 性格 그 顛末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다만 이 中立化論은 여러나라에 관계되었던 만큼 關係資料의 수집에 따라 다소 수정되는 경우도 있을것임을 밝혀둔다.

二. 淸日戰爭時 日帝의 韓國中立案과 列強의 仁川中立論

淸日兩國의 국제정세가 급박해지며 戰爭으로 치닫고 있을 때 日帝는 1894년 韓國의 中立化를 企圖하였다. 이는 日淸兩國의 軍事的인 충돌로부터 韓國을 보호하자는 뜻은 물론 아니다. 日帝의 韓國中立化企圖의 속셈은 韓國侵略을 전제로 하여 취해진 조치였다. 즉 淸日兩國의 軍事的인 충돌이 예상된데서 戰爭이 일어날 경우에 대비해서 취한 행동의 일단이었다. 다시 말하면 韓淸紐帶關係의 歴史的 背景을 예상하고 戰爭勃發時에 대비해서 사전에 韓淸關係를 단절시켜 戰勢를 日本側에 유리하게 전개시키려는 의도에서 취해진 하나의 方法論이었다. 그래서 취해진 日帝의 韓國中立化試圖는 表裏不同한 侵略性을 내포한 것으로 그 内心을 간추려 본다면

日帝는 對韓侵略政策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方法과 手段을 찾으면서 韓淸間의 특수한 유대關係를 단절시키려는 것이었다. 표면상으로는 우리나라를 생각하는듯 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韓國을 國際社會에서 고립시켜 놓고 淸國과의 戰爭을 수행하자는 것이며 日帝의 侵略勢力을 침투시키기 위하여 취해진 방법이었다.

이같은 日帝의 속셈은 그 根源을 소급해서 살펴볼 必要가 있다. 즉 日帝는 丙子修好條約文의 제1조에서 韓淸間의 유대關係를 끊기 위하여 朝鮮의 「自主之邦」을 강조한 것은 이미 다 아는 사실이지만 開港後에는 우리國內에서 開化派와 衛正斥邪派間에 反目과 갈등이 심해진 속에서 壬午軍亂과 甲申政變이 일어났고 그때마다 日本

이 취한 對韓政策을 보면 勢力浸透를 위해 여러가지 형태로 伸縮性을 보여주었다. 특히 壬午軍亂에 대한 처리결과로 濟物浦條約을 체결케 해서 侵略的인 권익을 條約上으로 보장 받았으나 日本軍事教練教官의 韓國政府雇聘등 특수권익은 淸國에 매앗기게 되었다. 그리하여 淸國의 對韓政策이 日帝보다 우세를 보이자 日本의 對韓政策은 強穩의 두가지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¹⁾ 이제 그 내용을 간추려 본다면

첫째 強硬政策이라고 할 수 있는 積極論을 들 수 있다. 이는 基本的으로 한국내에다가 日帝의 세력침투를 위하여 淸國의 對韓干涉을 배제하자는 것이다. 그같은 목적을 달성하는 方法으로서 취해진것은 우선 衛正斥邪派와 親淸系列인 淸勢力을 배제하기 위해 反對立場에 있는 開化獨立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그 自身이 自主獨立의 위신을 内外에 선양하도록 하고 또 한편으로는 日本의 권익침투를 위해 淸國과 직접 談判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美·英·獨·仏 등 列強과 協力하여 韓淸關係를 끊기 위해 朝鮮國의 獨立을 공동으로 보장하자는 것 등이었다.

이는 韓淸關係를 단절시키고 韓國을 列強의 共同保護圈으로 하자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韓國問題를 列強의 共同措置속으로 끌어 넣자는 것이며 소위 「朝鮮의 中立化」를 의미하는 것이 되었다. 그리하여 日本의 政治人中에도 伊藤博文이 그렇게 주장하였으며 당시의 新聞들도 이 경향으로 나타났다. 例示컨데 日本의 報知新聞은 社說에서 까지 機會를 보아 淸韓兩國과 英美法德 등의 6개국 대표를 東京으

로 초청하여 회의를 열고²⁾ 朝鮮의 獨立을 조약으로 공동보장하여 두자고까지 주장하였다.

두째는 消極論이다. 이는 한국에 대하여 지금 支援하려고 힘쓸 것이 아니라 淸國態度를 당분간 관망하여 東洋平和를 유지하고 日本自体의 實力을 길러 後日을 도모하자는 것이었다. 이는 日本의 軍事力이나 국제관계 등 모든 것이 淸國을 상대로 實力을 겨루기에는 아직 時期尙早라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外務卿 井上을 비롯하여 政府高官들이 대체로 이같은 경향을 취하였던 것이다.

이는 日本의 對韓政策에서 그 事例를 찾을 때 마치 征韓論을 둘러싸고 즉시 행하자는 것과 時期尙早라는 견해로 나누어져 強穩兩論으로 맞선 것과 같은 것이라 할것이다.³⁾ 그러나 이같은 消極論도 淸仙安南事件이 일어나자 日本은 태도를 돌변하였다. 이때 淸의 對韓政策이 安南問題로 적극성을 떨 여유가 없을 것이라 예측한 日本은 마치 우리나라의 開化政策을 돕는 것처럼 종전까지의 방관적인 태도를 바꾸어 開化獨立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나섰으며 淸仙安南事件에 대하여 淸에 대해서는 局外中立態度까지 취하였다. 즉

朕은 各國과 平和를 慶함을 有함에 當하여 지금 不幸히도 프랑스國과 淸國間에 交戰을 開함에 遇하였다. 朕 본래부터 兩交戰國과 均등하게 同盟和親의 交誼를 오로지하며 아울러 朕 이 臣民으로 하여금 平和의 幸福을 保하고자 欲하며 兩國의 交戰에 있어서 단연코 嚴正不偏의 局外中立을 取하기로 決定하였다. ...⁴⁾

이렇게 능청을 떨면서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에 세력을 침투시키기에 바빴다. 이처럼 日本은 壬午軍亂과 甲申政變으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日本의 對韓政策은 수시로 변경되고 淸國과 列強을 의식하는 變數속에서 우선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서 韓淸關係 다시 말해서 먼저 淸國이 朝鮮에 대하여 宗主權을 주장하므로, 우선 韓淸紐帶關係를 끊는 것이고 그 다음은 韓國은 국제사회에서 형식상으로 中立國으로 만든다음에 日本勢力의 침투장소로 만들자는 속셈인데 이는 어디까지나 장차 韓國을 侵略對象地化하자는 前段階가 되었던 것이다.

이같은 日帝의 對韓政策이 취해지는 가운데 日帝로 하여금 行動의 기회를 준것은 1894년의 東學農民蜂起이다. 韓國을 둘러싸고 勢力浸透를 위해 淸國과 경쟁하던 日帝가 淸國에 밀려 한때나마 정치적으로 후퇴했던 세력을 만회하기 위하여 제빨리 侵略的인 行動을 취했는바 그것은 陸奧外大의 對韓政策 4 個案과 日本政府의 閣議에서 결정된 사항에서 잘 나타나 있다.

이때 日本은 對淸戰爭을 의식하고 開戰後 日帝의 對韓政略으로서 韓日攻守同盟까지 예상하면서 對淸宣戰布告한지 3일 후에 駐韓日本 大鳥公使가 陸奧宗光外務大臣에게 今後의 對韓政策으로서 건의한 4 個項의 내용을 보면 잘 나타나 있다. 그것은 主要綱目을 열거하고 方案에 대해서 추진하여 나갈때 그에 따르는 疑問과 問題點도 아울러 열거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선 4 個案의 綱目만을 보면 다음과 같다. 5)

(甲) 日本政府는 이미 朝鮮을 獨立國으로 공인하며 또 그 內政을 改革케 한다고 성명하였다. 따라서 今後 對淸戰爭에 승리한 이후라고 하더라도 朝鮮을 依然히 1개 獨立國으로 하여 全然 그 自主 自治에 放任하고 日本으로부터도 간섭하지 않을 뿐 아니라 他國의 간섭도 이를 不許케 하여 그 運命을 朝鮮國 자체에 일임할 것

(乙) 朝鮮을 名義上 獨立國으로 公認하더라도 日本이 간접, 직접으로 영원히 或은 長期間 그 獨立을 保翼扶持하여 他의 輕侮를 방어하도록 힘쓸것

(丙) 朝鮮은 自力으로 그 獨立을 유지할 수 없으며 또 日本에 있어서도 직접 간접을 불문하고 單獨으로서 이를 보호할 수가 없다면 일찌기 英國政府가 日淸兩國政府에도 권고한 것처럼 朝鮮領土의 安全은 日淸兩國이 이를 담보할 것

(丁) 朝鮮이 自力으로서 獨立國다운 일은 도저히 바랄수 없고 또 日本이 獨立으로서 이를 保護함도 不利하며 또 日淸兩國에서 그 獨立을 담보함은 艱難피차 協同一致할 可望性이 없다고 할 때에 朝鮮을 世界의 中立國으로 할것을 日本이 歐美諸國과 淸國을 招請 勸誘하여 朝鮮國으로 하여금 歐洲의 自耳義, 瑞西 같은 地位에 설 수 있도록 할 것 등이었다.

이같은 建議를 중심으로 1894년 8월 17일 日本閣議에서는 對韓政策의 基本方針으로서 위의 4個項을 놓고 論議한 결과 4個案 가운데 맨 마즈막으로 논의된 韓國을 世界의 中立國으로 만드

는 것이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日帝의 軍事力이 列強을 제압할 수 있는 단계도 아닌데다가 淸日戰爭中이므로 列強에게 日帝侵略이라는 자극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게하려는 것으로 여겨진다. 어쨌든 日帝의 이같은 행동은 1904년 露日間의 정세가 긴박해질때를 연관시켜서 비추어 볼때 그때우리 韓國이 露日戰爭의 渦中에 휘말려들지 않으려고 中立國을 宣言할 때 日帝가 방해한 것과는 너무나도 根本적으로 다른 점이라할 것이다.

이때 日本閣議에서 채택된 4개항 중에 3개항은 獨立國, 軍獨保護國 日淸共同保護國으로 하자는 것인데 거기에는 어느 項目이나 추진해 나가는데 따르는 문제점등을 설명하고 各條目마다 각각 細部的인 의견까지 부연하고 있으며 맨 마즈막이 世界中立國化하자던 意見인 것이다. 그리고 日帝는 韓國에 대하여 世界中立化方案을 추진할 경우 그에 따르는 문제점으로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즉

1. 朝鮮國에 利害關係가 가장 많은 것은 日·淸兩國으로 今次의 交戰같은것도 또 日淸 양국간의 利害衝突에 불과한 것이라면 이번 戰爭의 결과로 생기는 名譽와 利益은 애당초 他的 歐洲各國으로 하여금 分受케 할 필요가 없다. 이를 分與하려 한다면 俗談에 「사냥개의 수고가 매의 밥만을 장만해 준다」는 것과 같이 日本의 損失이 所得보다도 많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며 日本國民은 자못 만족할 수 없을 것이다. 하물며 日本政府는

大兵을 출동시키고 巨額의 軍費를 소비한 결과가 何等의 所得도 없게 된다고하면 世論의 攻擊을 도저히 면할 수가 없을 것이 아니냐⁶⁾

이렇게 韓國問題에 대하여 處理方案을 제시하고 계속해서 논의하였다. 그들의 주장하는 위의 4개方案을 살펴보건데 어느 것이나 一利一害가 있는 것이라면서 만약 한번 잘못 택하면 자못 禍害를 後世에 남길 두려움이 없지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韓國에 관한 장래의 위치 여하를 생각하면 위 4개 方案外에 다른 方法이 없을 것 같다고 하여 4개方案中에서 하나를 택할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어느 方案에 歸着하든지 不問하고 日清交戰後 최종적으로 勝敗를 결정한 후가 아니면 일어날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閣議에서는 미리 위의 4개안 가운데 하나의 方案에 대하여 확정해 두지 않는다면 현재 전개하는 外交上의 조정문제에서나 또 軍事上의 행동에 있어서나 대단히 긴요한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러므로 閣議에서 미리 확정해 두어야 한다고 요망하면서 위의 4개방안 외에 다른 方案이 있으면 그것을 알고 싶다고 요망까지 하고 있다.⁷⁾

이같은 方案을 놓고 日本閣議에서는 신중하게 논의한 결과 두번째인 乙案을 중심으로 즉 日本의 单独保護라는 侵略政策下에 外交 軍事面의 업무를 추진키로 결정하였다. 그 결과에 따라 外務大臣으로부터 駐韓日本公使 大鳥에게 訓令이 내려지고

있다. 그가운데 요점만을 간추려 보면 日帝自身이 이미 韓國을 獨立國으로 公認하였고 또 韓國의 疆土를 침략할 뜻이 없다고 明言한 이상은 言行一致라는 점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韓國이 獨立國인 면목을 뚜렷하게 회손함과 같은 行動이나 韓國의 疆土를 실재로 약취함과 같은 행동은 될 수 있는대로 이를 피할 것 등 表裏不同한 政策을 취하도록 강조하고 있다.⁸⁾

그리하여 表面上으로는 韓國의 獨立權을 침해하는 행위는 가능한 한 피하고 韓國政府에 대한 請求도 韓國이 獨立國家로서의 체면유지와 日本의 要求를 감당할만한 범위내에서 주의깊게 처리하여야 하며 軍事上 필요한 경우의 物品이라도 代償을 주어 侵掠의 흔적이 남지 않도록 주의할 것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표면상 韓國의 獨立을 인정하여 주며 世界의 耳目을 가리게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日帝의 單獨保護國化하는데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淸勢力을 축출하고 또 이를 위해 韓國의 協力을 강요하기 위하여 韓國政府와의 假條約 체결을 서두르도록 訓令하고 있으며 그 결과 暫定合同條款을 맺고⁹⁾ 중요한 권익을 빼앗아 갔던 것이다.

한편 이렇게 日帝의 韓國侵略이 노골화되고 淸日關係의 악화로 國際情勢가 변화되자 在韓各國公使들도 日淸戰爭에 대하여 그들의 태도를 밝히고자 駐韓各國公使들은 1894년 7월 7일 外衙門에 모여서 淸日戰爭에 대하여 嚴正中立을 결의하였다.¹⁰⁾ 뿐만 아니라 7월 17일에는 다시 駐韓外國公使들의 會議에서 淸日戰爭이 일어날

때 仁川을 局外中立地로 삼으려다가 결정을 짓지 못하였다. 이때 淸國代表로 참석한 淸國駐在官 袁世凱는 公使의 資格이 없다는 이유로 駐韓公使會議에의 참석이 허용되지 않았던 것이다. ¹¹⁾ 그러나 仁川港의 中立問題는 日淸戰爭前에 일어나기 시작하여 世上에 그다지 알려지지 않은채 끝났던 것이다. 이 문제는 월래 英國領事의 提議에 의하여 駐韓各國使臣會議에서 누누히 논의되었다. 그 주된 내용은 仁川港 전체를 中立港 (Neutral part) 으로 삼아 日本軍의 上陸을 妨害하는 외에 일체의 軍需品과 糧食 등에 관한 軍事行動을 不許하자는 것이었다. 그러자 日本側의 반응은 그같은 仁川中立論을 비판하면서 이것은 日本軍을 곤경에 빠트리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中立이란 제 3 국이 交戰國에 대하여 취하는 공평한 태도이며 이를 거꾸로 말하면 交戰國이 일정한 權利 義務를 中立國에 대하여 부담시키려는 것이다. 따라서 中立의 權利 義務는 상대적인 것이다. 즉 中立의 義務는 交戰國의 權利와 대조되며 交戰國의 義務는 中立國의 權利에 대조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權利義務에 관해서는 상세한 규정도 있지만 요컨대 조선에서의 日本軍의 軍事行動을 거부하려는 목적에서 英國領事에 의하여 제의된 것이라 하였던 것이다. ¹²⁾

이같은 일련의 사정에 대하여 駐韓日本公使館 臨時代理公使였던 杉村濶에 의하면 仁川港의 中立提議로 日本側이 당황하였던 사정을 충분히 엿볼수가 있다. 즉 1894년 7월 7일에 英國領事등의 제의에 의하여 仁川港中立問題로 統理衙門에서 駐韓各國使臣會議가 개

취되었던 것이다. 이보다 앞서 日本軍의 來韓駐屯으로 초조해진 淸使 袁世凱는 日本軍을 撤退시키려는 企圖下에 大鳥公使와 兩國軍의 同時撤收를 협의했으나 도중에 日本側의 異議提起로 袁世凱는 各國使臣에게 내면적으로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되어 있다. 물론 우리 政府에서는 東學農民蜂起의 진압으로 淸日兩國軍의 동시 철수를 요구했으나 日本側은 듣지않고 오히려 韓國의 內政改革을 단행해야 된다는 侵略的인 의사를 노골적으로 취하며 強壓하던 사실이 바로 日本側의 撤軍反對로 나타난 것이라 할 것이다.

어떻던 袁世凱의 外交的인 노력은 各國外交官의 도움을 얻게 되었으며 各國使臣은 일마다 日本과 반대 입장을 취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때문에 日本側에서도 駐韓外交使臣을 초청하여 懇談會를 갖는 등 여러가지로 힘쓰게 되었고 이에 따라 日本側에 동정자가 생겼으며 드디어 英國領事의 發議로 인하여 仁川港中立問題가 논의되었다는 사실도 日本側이 알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당시 仁川港에 상륙한 日本軍은 日本居留地外에 外國居留地內의 日本家屋에도 다수가 숙박하였는데 各國居留地會는 決議로서 日本軍의 各國居留地內 숙박을 거절하게 되었는데 이는 各國居留地內의 外國人들이 戰禍에서 벗어나려는 행동으로 보이나 日本側은 이에 대하여 日本軍의 활동 방해로 여기고 各國居留地內의 日本住居地에서의 日本軍撤收提議를 받아드리지 않았던 것이다.

이래서 仁川港의 中立提議는 10 일에 다시 논의했으나 결정짓지 못하고 끝났다. 이는 老人亭會談 즉 韓國의 內政改革에 대한 日

本側의 제의로 열린 회담은 3차나 열렸으나 日本側의 강요속에서 内政干渉으로 나오게 되어 妥協은 完全히 결렬되고 일본측이 일방적으로 강행하려는 기세를 취한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 仁川港中立案도 뜻을 이룰수가 없었다.

어떻던 위와같은 仁川港中立化案과 駐韓外交使節들의 행동등 일련의 문제에 관하여 大鳥公使는 内心깊이 당항한 것이지만 仁川港을 中立地로 하려면은 各國은 먼저 다음 事項을 이행해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즉

첫째 仁川港에서 日本軍과 軍器 등의 上陸 및 乘船에 대하여 지장없게 할 것

두째 仁川港 日本居留地內에 日本人保護에 필요한 軍隊를 주둔케 할 것¹³⁾ 등의 조건을 제시하고 그것이 승락되지 않는 限 仁川港 中立을 동의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다만 韓國軍 또는 他國兵이 와서 日本軍을 공격하거나 또는 兵力으로서 日本人에게 危害를 가하려 할 때는 이에 저항하여 日本人을 보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仁川港駐屯日本軍은 결코 各國居留地에 대하여 위협을 가하지 않을 것을 보증한다는 것이었다.

이와같은 일련의 문제료 16일에 다시 仁川港中立問題 때문에 회의가 열려 大鳥公使도 참석하였다. 이때에 英國領事는 中立主張을 강력히 주장했으나 러시아公使 웨벨이 강력히 반대하여 仁川港中立問題를 결정짓지 못하고 해산되었으며 이 문제는 다시 논의되지 않았는데 이는 러시아公使의 반대에 의한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

에 불만을 품은 英國領事는 淸國을 위해 仁川各國居留地內에 日本軍駐屯을 반대하며 日本軍用電線의 통과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英國領事는 夫人을 동반하고 이유없이 日本步哨線을 넘나드는 등 고의로 日本軍의 행동을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¹⁴⁾

이처럼 특히 仁川港의 中立提議가 되고 各國外交官들의 큰 관심이 된 것은 仁川港이 서울關門일 뿐만 아니라 各國居留地의 설정 등으로 各國의 利害關係가 컸으며 또 한편으로는 日本의 팽창을 막으려고 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仁川港에 설치된 日本人專管居留地와 各國人의 공동 거주하는 一般外國人居留地와는 성격상으로도 크게 다르지만 특히 日本側의 利權이 깊이 관계되고 또 일본 세력이 다른 나라를 앞질러 노골적으로 나타나는 데서 오는 원인도 큰 것이라 할 것이다. 그리하여 居留地 설정 당시부터 位置 面積, 土地購入 등 많은 부작용이 있었던 것을 상기할 수가 있다. ¹⁵⁾

이처럼 各國의 利害關係가 얽혀서 仁川港中立이 제의되고 논의되었으나 그후 몇나라의 태도를 보면 상당히 달라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먼저 美國의 태도를 보면 日·淸 어느 쪽에도 가담하지 않는다는 英國駐劄美國公使 바야드가 밝힌 것처럼 美合衆國은 「寬大中立」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日本 또는 淸國에 강박적인 간섭을 목적으로 하는 것 같은 同盟條約 또는 그같은 結合에는 참가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바 ¹⁶⁾ 이로서 볼 때 仁川港中立 등의 집단 행동에 가담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여겨진다. 獨逸의 경우를 보면

本國政府로부터 局外中立을 지킬 것이라는 요지의 통지가 있었다고 日本駐劄獨逸特命全權公使 폰·구돈밋트가 말했다고 하였으며¹⁷⁾ 英國 外務大臣 킴바레이伯은 日淸戰爭에 대하여 局外中立을 취할 것을 各國에 권유하였는데 프랑스는 諸國에 앞서 英國의 권유에 응할 뜻을 회답하였다는 것이다.¹⁸⁾

이래서 日淸戰爭이 급박해질 때 各國은 韓國에 있어서의 自國의 權益保護라는 의도하에 仁川港中立을 협의하였으나 結實을 못보고 이제는 日淸戰爭에 不介入의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1. 李鉉淙 旧韓末 外國人雇聘考 韓國史研究 8 이때 日帝는 壬午 軍亂으로 세력이 약해지며 軍事顧問官까지 淸國에 빼앗기고 對韓政策에 腐心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 李瑄根 韓國史 最近世篇 P.592
田保福潔 近代日鮮關係의 研究上卷 P.904-907 參照
王信忠 中日 甲午戰爭之外交背景 P.51에서 日本의 有力新聞들이 爲朝鮮中立上提議라하고 日日, 每日, 報知, 自由 등 여러 新聞의 社說을 소개하며 그中에 代表的 理論이 報知新聞이었음을 紹介하였음.
3. 이때 征韓論를 놓고 強硬論에 반대한 온건파는 日本의 힘이 약한 때문에 時期尙早로 맞선것과 같은 것이다.
4. 伊藤博文編 秘書類纂 外交篇上卷 P.654
[局外中立 勅旨案 附 太政大臣ヨリ 臣이와 아울러 局外中立規則案

15条目이 되어 外務卿으로부터 各地方에 訓令되고 布告案까지
 이룩하고 있는데 (上同 P.659, 665) 參考로 제1조만을
 보면 다음과 같다. 「我臣民及^レ我版図内ニ在ル人民ハ 局外中
 立ノ勅旨ニ違背シ 兩交戦国ノ陸海軍ニ任職又ハ使用セラルルコトヲ承
 認スルコト 若クハ承諾スルノ約定ヲナスコト 若クハ承諾スルノ目的
 ヲ以テ 船舶ニ乗組ム トヲ禁ズ

但シ兩交戦国ノ人民一時我版図内ニ在ルニ方リ 軍艦ノ我版図内ニ
 到着スル前ニ於テ既ニ軍艦ノ裝備ヲナシタルモノニ乗組ミ 就役ズルハ
 比限ニアラス

5. 日本外交文書卷 27 第 1 冊 P.646-649 文書番号 438 「朝鮮問題ニ關
 スル將來ノ日本ノ政策ニ關スル閣議案上申ノ件」 閣議案
6. 日本外交文書卷 27 第 1 冊 P.646 文書番 438 P.649 閣議案第丁
 頂에 부속된 疑問點으로 제시된 것인데 2 項은 日本外交文書
 에 보이지 않는다.
7. 日本外交文書卷 27 第 1 冊 P.646 文書番号 438 의 끝部分
8. 日本外交文書卷 27 第 1 冊 P.441 文書番号 441 「朝鮮國ニ對ス
 ル將來ノ政策ニ關シ訓令 1 件
9. 日本外交文書卷 27 第 1 冊 P.652-656 文書番号 442 「朝鮮政府
 ト假條約締結ノ件」 그 附屬書로서 暫定合同條款과 漢文本이
 함께 게재되 있다.
10. 新聞集成 明治編年史卷 9 P.182-3 明治 27 年 7 月 7 日 明治 27 年
 回顧の日録

11. 新聞集成 明治編年史卷9 P.100 明治27年7月18日 仁川の局外中立地否決 さる 袁世凱の列席拒絶
12. 仁川府史(1933年刊) P.411
13. 杉村濬 在韓苦心録
仁川府史 P.412
14. 仁川府史 P.412
15. 李鉉淙 韓国開港場研究 P.204 仁川日本專管居留地設定, P.242
仁川 釜山 元山清国居留地設定 P.272 仁川各国居留地設定
P.410-430 各国共同租界廢止協議와 協定内容 그리고 居留地廢止議定書承認交渉
16. 新聞集成 明治編年史 9卷 P.123 米国は寛大中立 明治27年
8月26日 時事
17. 新聞集成 明治編年史 9卷 P.128 明治27年9月2日 時事,
独逸=局外中立
18. 新聞集成 明治編年史 9卷 P.148 明治27年10月3日 時事
英国は各国に向つて局外中立を懇願

三. 獨立協會의 中立外交論

日本은 淸日戰爭을 일으키면서 우리나라가 淸과 협력하여 共同戰線을 펼까보아 이를 막고자 韓淸關係를 단절시키기 위해 힘썼다. 그 가운데 하나로서 韓國中立案을 시도해보며 당장에 韓日同盟 같은 것으로 강요하는 직접적인 행동을 삼가하였다. 그러나 日本側은 對韓侵略政策의 基本方向으로서 日本閣議에서의 4 個案을 놓고 논의한 끝에 日本의 單獨保護라는 大前提를 세워 이를 강력히 추진하였으며 淸日戰爭에서 승리하여 對韓侵略政策은 확정된 셈이었다. 그러나 러시아, 프랑스, 獨逸의 三國干涉으로 인해 日本은 정치적으로 한때나마 물러서지 않을 수 없었다. 이처럼 러시아가 크게 작용하자 그 영향도 커서 우리政界에는 親露傾向으로 급선회하였다. 그리하여 日本의 한국 侵略政策은 표면상으로 후퇴된 듯이 보였으나 실재로는 잠재적인 방향으로 바뀌어졌고 그 대신 러시아의 세력이 다가오고 있었다.

이같은 國際勢力의 渦中에 휩싸여 들어가는 것을 막으려고 民族意識이 강하였던 獨立協會에서는 韓國의 對外政策의 방향을 中立外交論으로 내세우고 이의 실천을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日帝侵略이나 러시아 세력의 접근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또 그들의 侵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對外關係의 수립을 위해 中立外交論을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먼저 獨立協會를 구성한 단체 가운데 하나인 貞洞俱樂部에

의해서 제외되었다. ¹⁾ 貞洞俱樂部는 주로 外交界官僚로서 구성되어 駐韓各国外交官들과 넬리 교제를 가지고 있던 官僚勢力들이었다. 이 俱樂部에 소속된 주요 한국인은 閔泳煥 尹致昊 李商在 徐載弼 李完用 등이었고 外国人으로서 주요회원은 美国公使 실 (John M. B. Sill), 프랑스領事 프랑스 (Collin de Plancy), 韓國政府의 顧問인 다이 (William M. Dye)와 리젠 도어 (Charles W. Legendre : 韓國名 李善得), 美国宣教師 언더우드 (Horace G. Underwood) 그리고 아펜젤러 (H. G. Appenzeller) 등이다.

이들은 우리나라를 中立國으로 만들기 위하여 中立化案을 작성하려는 社交클럽이었다. ²⁾ 특히 이들은 러시아, 프랑스, 美·英 등의 外国公使 및 參事官들과 서로 긴밀한 親分關係를 가지고 있었으며 스스로가 外交通으로 자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서 列強으로부터는 우리의 自主獨立과 主權守護, 그리고 利權讓与의 反對運動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中立外交論을 퍼게 된 것이다.

이처럼 거센 列強의 세력 침투 속에서 우리가 휘말려 들거나 그들의 幕後 折衷이나 協商에 의하여 희생될 수 없다는 基本精神에서 나온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때 獨立協會가 주동이 되어 전개한 中立外交論은 中立化論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이렇게 獨立協會가 不偏不党한 中立外交의 전개를 주장하여 어느 나라에 대해서나 편백되지 않는 공평한 外交를 전개하여야 한다고 하였는데 ³⁾ 이제 獨立協會가 中立外交를 주장하게 된 이유를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1. 만일 自主的인 입장에서 中立外交를 펴지않고 어느 한 나라에 偏重된 外交를 펴다면 그에 반대되는 다른 列強은 内政干涉을 하여 政府를 전복시키려 企圖하므로 国内政情이 불안하여 진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2. 러시아와 日本은 이미 많은 利權을 우리나라에서 침탈하여 갔고 日本이 軍備增強에 광분하여 日露戰爭의 발발할 개연성이 높은데 우리 정부의 외교가 自主的이며 中立外交를 전개하지 않고 어느 한 나라에 편중될 경우 露日戰爭이 우리 영토위에서 발발할 위험이 있고, 이 경우에 결국 우리나라가 戰禍를 입게 되기 쉽다는 것이다.

3. 韓國外交는 強大國 사이에서 전개되는 外交이므로 강대국에 트집 잡히는 일을 조금이라도 해서 트집 잡히는 일이 없어야 하며 처음부터 불리한 條約을 맺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부득이해서 條約을 맺을 경우에는 信義를 지키면서 하루속히 國富強兵을 이루어 힘을 갖추어 잃어버린 權利를 찾도록 實利外交를 전개하여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특히 防穀令을 내려 事後處理도 제대로 못했던 守旧派의 外交方式을 事例로 들고 防穀令의 선포는 결과적으로 손해배상만을 당하는 外交를 폄다고 개탄하고 있는 것이다. 4)

이상과 같은 견해를 종합해 보면 獨立協會가 주장하는 中立外交는 自主性이나 理想的으로는 모두가 나무랄 때 없는 옳은 것이다.

그러나 당시의 우리나라 형편을 볼 때 列強을 견제할 만한 富國
強兵策도 되어있지 못하여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다. 또 설혹
불리한 條約을 이미 맺은 경우라도 信義를 지키면서 實力主義國家
로 전환해야 한다는 말은 모두가 옳은 것이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우리나라가 부강하기 전에 그들은 먼저 物理的인 힘을 가하
여 오므로 사실상 불가능했던 것인바 理想論같은 느낌마저 안겨주
고 있다.

또 凶年으로 인하여 우리民族의 饑饉을 막고자 威鏡監司 趙秉式
이 對日米穀流出을 막고자 발동시킨 防穀令도 日帝를 견제하는 방
법으로는 불가피한 일가운데 하나였던 것이기도 하다. 우리에게 불
리한 條約이나 불리한 外交도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
니고 맺은 것도 아니었다. 近代社會에 대해서 잘 모른데다가 開
港後 日帝의 강요된 속에서 條約이 맺어진 것으로 유추해 볼 때
우리에게 불리한 條約도 信義를 지켜야 된다는 것 등은 그 뒤의
韓日關係의 조약으로 연결시켜 볼 때 현실에 도저히 맞지않는 理
想論에 불과한 原則論의 주장같은 느낌마저 주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見解는 1905년 이후의 各種社會團體의 활동에서
보아도 卓上理論같은 경우가 없지 않으나 크게 보면 民族意識과
自主性을 강조하는 일면에서는 상통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
다.

어떻던 이 때 獨立協會가 주장한 中立外交論에 대한 견해는 獨
立新聞에서도 잘 보이고 있다. 즉

朝鮮이 가난한 처지와 같으니 아모쪼록 어느나라를 편벽되게 交際를 한다던지 어떤 나라의 權利를 다른 나라 보다 더 가지게 한다던지 누구에게 의지를 하려고 한다던지 하거드면 필경 다른 나라들이 그것을 새삼하고 시기하야 그 편벽되히 대접받는 나라와 시기하는 나라들 사이에 싸움이 있을지라, 만일 싸움 곧 나거드면 朝鮮은 누가 이기던지 없어지는 날이니 그렇게 불진대 朝鮮의 上策은 아모쪼록 조선까닭에 다른 나라들이 싸움 아니하도록 일을 하여야 할지라, 그건 무엇인고 하니 世界各國을 공체로는 애증과 등분이 업시 公平하게 모두 친구로 대접하고 내 權利난 조곰치도 남의 나라에 뺏기지 말며 내 일만 물을 쥐여먹어가며 하여 내 처지를 튼튼히 되도록 만들고 있으면 그 때 난 아모 염너가 업실터이라... 5)

이같은 일련의 견해는 列強의 猜忌와 對立葛藤, 侵略이라는 갈등 속에서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가능한 方法이 결국은 列強의 勢力均衡을 유지시켜야 된다는 것 뿐이라는데서 나온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대한 뒷받침을 위해 對內的으로는 國政改革과 自強을 실현하여 나갈 때 韓國을 둘러싼 戰爭時에도 우리의 自主獨立을 유지시킬 수 있는 것이라는데서 취해진 최선의 方法으로 연결지으려는데서 취해진 方法論으로 여겨지며 中立的인 태도로 일관할 것임을 역설하고 있다.

2 . 文一平 湖岩全集1 P.195-7

徐載弼博士自叙伝 P.215

3 . 鄭喬 民会実記 光武2年陰2月14日

4 . 慎鏞 独立協會研究 P.159 에서 상세히 밝히고 있어 참고
하였다. 独立新聞 1897年5月25日 論說

5 . 独立新聞 1897年8月10日

四. 러시아의 韓國中立提議와 日本의 反應

러시아의 韓國中立提議는 韓國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日本勢力의 팽창을 막는 동시에 러시아 세력이 확장을 위한 저의에서 발상된 것이다. 러시아의 極東進出을 위한 南進政策은 우리 역사상 羅禪征伐이라는 黑龍江戰鬪로 맺어졌고 近代에는 韓露修好通商條約을 맺은 후 그들의 세력은 淸日戰爭後부터 더욱 깊숙히 들어왔다. 이는 韓國과 大陸侵略을 위한 日本勢力과 부딪치게 되었고 그 대표적인 것이 淸日戰爭後 三國干涉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滿洲에 대한 利權問題로 露日兩國이 충돌하게 되었으며 韓半島는 가장 중요한 직접적인 爭點化했고 우리 政界에도 親露派라는 새로운 政治勢力이 형성되고 나아가 日本과는 더욱 심한 갈등과 충돌을 불러 일으키게 되었다. 우리나라에 대한 勢力浸透를 경쟁하던 淸國은 日本에 의해 사실상 물러나고 이제 日本과 러시아로 새로운 角遂이 시작되었으며 그런 상황에서 연쇄적으로 빚은 결과가 閔妃弑害事件, 俄館 播遷, 韓國中立化論 39度線分割論 그리고 露日戰爭으로 점철되었다. 淸日戰爭 당시에는 韓國側의 淸國協助를 막기 위해 日本側이 韓國中立化를 企圖하더니 이제는 러시아가 日本과의 角遂속에서 戰爭으로 치달으며 韓國에 自國勢力을 부식하는 동시에 日本側의 韓國利用을 사전에 막고자 제기된 것이 바로 러시아의 韓國中立化이다. 이는 內面的으로 1900년 경에 나온 것으로 여겨지나¹⁾ 본격적으로는 1902년에 제기되고 있다. 그 결과

列強에 대하여 상당히 주목의 대상이 되면서 특히 日本側の 민감한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때 러시아가 제기한 韓國中立論은 日本·러시아 美國의 三國共同保障下에 韓國中立을 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요약된다. 이제 그 경위에서부터 논의된 사항을 보면 駐美露國公使파푸로프가 美國에서 日·露·美 三國의 共同保障下에 韓國中立을 제의하였다는 내용이 日本小村外務大臣으로부터 駐露日本公使栗野에게 1902년 9월 17일 電報로 알려지고²⁾ 9월 22일에는 駐韓日本公使林權助에게 訓令하여 高宗即位 40년 慶祝式에 前駐韓露國公使였던 웨벨의 來韓問題도 언급하였다. 웨벨의 來韓은 祝典慶祝外에 다른 어떤 使命을 띤 것이 아니라고 러시아外務大臣이 栗野 駐露日本公使에게 밝혔지만 이는 절대적인 信用은 못된다는 것이다. 자기가 확실한 것으로 듣는 바에 의하면 지난번 歸國途中 日本에 들린 駐美露國公使파푸로프는 東京滯在中 韓國問題에 관하여 Iswolsky 公使와 종종 密議하는데 그 결과 위의 두사람 및 在美露國大使 Cassini로부터 日·露·美 三國의 공동담보하에 韓國을 永久中立國으로 삼으려는 論議를 자기들의 本國政府(러시아)에 獻策하기로 결정하고 파푸로프는 歸國 당시 파리에서 그곳에 체재중인 Cassini를 보고 찬의를 득족할 것이라고 하는바 그렇다면 웨벨의 來韓도 후시는 이 문제와 관계가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永久中立論議는 앞서 韓國으로부터도 먼저 日本에 제기해온 일도 있다. 韓國朝廷에서는 일부의 무리들이 지금도 夢想하는 바로서, (아마도 이는 親

露派를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웨벨의 來韓과 함께 中立論의 재연이 있을지도 헤아리기 어렵다며 閣下도 특히 이점에 주의하기 바라며, 더우기 파푸로프 등의 企劃件은 각하 일신에게까지 미치게 하였는바 양지하기 바란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웨벨의 來韓에 대하여 政治的인 使命이나 위에서 말한 中立論과 관계가 없다면 다른 목적으로서 두가지를 들 수가 있을 것이다. 하나는 韓國皇帝의 즉위 40년 慶祝大典에 지음해서 韓國朝廷의 財源固竭에 편승하여 甘言으로서 借款을 제기하며, 여기에 대한 보상으로 어떤 특권을 얻으려는 것이 러시아의 胸算일 것이다. 또다른 하나는 프랑스를 이용하여 京義鐵道 부설권을 얻으려는 것일 것이라면서 이점에 대해서도 유의하라고 지시하고 있다³⁾

이같은 注視속에서 來韓한 웨벨에 대해서 그 情報探知가 진행되는 가운데 9월 22일 駐美日本公使는 小村外務大臣에게 韓國中立問題에 관하여 訓令을 요청하자⁴⁾ 韓國中立問題는 다음 別途訓令이 있을 때까지 極秘로 하라는 指示가 내려지고 있다.⁵⁾ 그리고 駐美日本公使는 小村外大에게 韓國中立 移民法 布哇問題 등이 폭주하여 任地를 떠나는 것을 연기하고 있다.

러시아의 韓國中立化提議問題는 어떻던 世界列強에 커다란 충격을 준 듯하다. 1902년 10월 6일 駐美日本公使高平으로부터 小村外大에 의 보고에 따르면 韓國中立問題에 대하여 美國務長官과의 會談內容이 보고되고 있다. 즉 國務長官은 4일에 러시아大使는 5일에 파리에서 귀향하였다. 그리하여 자기는 (日本公使) 國務長官을 맞

났는데 國務長官의 말에 따르면 러시아로부터 아무런 제의를 받지 않았으며 그리고 이후 만약 그같은 일이 있으면 本問題에 관하여 日本側에 충분히 고려할 것을 약속하였다고 보고 있다. 6)

이같은 러시아의 韓國中立化提議는 日本政府로 하여금 당혹케 하였지만 海外日本公館에서도 사실의 확인 규명에 열을 올리고 있다. 駐英日本公使가 日本外大에게 韓國中立問題에 관하여 訓令要請하며 사정을 밝힌데서 그 이유를 본다면 日·露·美 三國保障下에 韓國中立化의 企圖에 대해서는 駐韓露公使파부로프의 滯京時 美國駐露國大使 Cassini 伯과 다시합의하여 각각 자기의 本國政府에 건의 하 려하고 있다. 지난 9월 20일 전보 94호에 접하여 러시아 外交官이 韓國問題에 관하여 焦心苦慮하는 상황이 드디어 일단락되었다. 더욱이 그 전보는 이 訓令의 취지에 따라 곧 駐仏·駐美 兩公使에 轉電하는 동시에 駐美公使에게는 中立化件의 되어가는 것에 관하여 Cassini 伯 歸美後의 동정과 아울러 美國政府의 韓國中立化의 문제에 대한 태도에 대하여 전심으로 경계하라는 요지의 訓令과 함께 轉電해주도록 바라고 있다.

韓國中立化에 관해서는 本國政府(日本)에서 지시한데로 駐美公使로부터의 論言도 있으므로 대단히 秘密에 붙일 것은 물론이지만 본래 日英同盟條約제 5 조의 정신에 입각하여 淸韓에 관한 일 등 중요내용은 될수 있는데로 이를 교환함이 得策이라 말하고 또 이를 종래의 慣例에 비추어 美國政府는 본 문제와 같은 사건에 접할 때는 먼저 當國政府에 통고하여 그 의향을 확인함은 필연적인

일이다. 그러므로 만약 본 문제의 보도가 초만간 当国政府의 들은데로 할 수 없다면 미리 日本政府로부터 이를 通報해두는 것이 좋은 것으로 여겨진다고 하고있다. 7)

駐韓日本公使가 小村外大에게 보고한 내용을 보면 8) 日韓兩國駐在露國公使는 日·美·露 三国共同担保下에 韓國을 中立시킬 方案을 협의하여 파푸로프가 귀국하면 駐美露大使와 巴里에서 회담하여 三使가 협동해서 本案을 本國 (러시아政府)에 제출하고 美國政府에 권고해서 美政府로 부터 發議시킬 계획임을 말하고 그러므로 차재에 있어서 訓令趣旨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Cassini 伯의 거동을 정찰한 후에 美政府의 태도를 주시함이 옳다고 여겨지나 숙고해보건대 Cassini 伯은 어떤 理由를 근거로하여 本案을 제출했는지 헤아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그 理由에 대해서는 先入感이지만 國務長官이 日本에 대하여 不利한 생각을 품지않았다 하더라도 될 수 있는대로 Cassini 伯에 앞서 國務長官에게 면회하여 韓國中立案을 타파하는 수단을 강구함으로써 機先을 制함이 어떠할까 하는 생각에서 자기는 지난 6일 國務長官을 방문하여 韓國中立化件에 관하여 들은바 없느냐고 물었다 그리고 駐日美公使의 말에 따르면 러시아로부터 韓國中立案을 日本政府에 보낸 것처럼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그러느냐고 反問한데 대하여 자기는 (日本公使) 당시 美公使의 보고가 과연 日本政府에 달했는가의 与否를 알지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자기는 자진해서 美國務長官과 다음과 같이 對話를 나누었다 하였는데 그 속에서 日本公使의 말을 들으면

日本은 러시아가 제의한 韓國中立化를 반대하는 뜻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對話中에 중요한 것을 간추려 보면 日本公使： 이번 일은 日韓兩國駐劄公使들이 협의후 다시 파푸로프로부터 Cassini 伯에게 의논케한다음 三使協同하여 日本政府에 제의후 美政府에 제공하려는 計劃에서인 것이나 원래 본건에 대하여 本官이 확실히 태도를 바라는 바는 今日 어떤 必要가 있어서 韓國의 中立을 담보하려 하는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日本이 韓國에 있어서나 淸國에 있어서나 이를 유도·扶掖하려는 외에 他意없으므로 書生을 教養하며 官吏를 貸與하며 財務補助 등의 수단을 배풀기는 하였으나 일찌기 內治에 간여하는 것과 같은 일은 없었다. 그런데 러시아가 中立案을 제출하려함은 中立 그 자체보다도 따로 深遠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다면 오늘날 특히 걱정할 것은 없다. 즉 軍事的인 견지에서 그 필요를 看出하려함도 헤아리기 어렵다. 旅順과 우리디보스톡의 聯絡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馬山浦를 占取하려 한 사실은⁹⁾ 이미 世人所知이나 韓半島를 中立化할 때는 한층 적절하게 그 目的을 달성할 뿐만 아니라 日本과 滿洲와의 交通을 阻制할 수 있는 效果로서 러시아는 韓國의 中立에 의하여 日本의 陸軍國(Military power)인 세력을 中性化할 뜻이 있음을 의심하지 않는다. 과연 그렇게 될 때 韓國中立化案은 滿洲還附問題와도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간주하지 않을 수 없다.

國務長官： 러시아는 滿洲還附에 관해서 再三 확인했으며 현재

그 証言을 실천중에 있는바 그 점 美國政府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

日本公使： 그점은 日本政府의 의견도 같다. 그러나 淸國事情이 아직도 불안하여 장래가 걱정된다. 어느때 어느 곳에서 義和團이 再起안된다고 할 수 없다. 만약 그같은 사건이 일어난다면 滿洲 遼附는 늦어질지 모른다. 그럴때는 그 実行이 되던 안되던 각국 간의 政治的 관계에 의하여 결정짓지 않을 수 없다. 이럴때 日本勢力을 韓國에 誘致함은 極東平和를 위하여 긴요한 일이다.

이외에도 파푸로프는 Cassini 伯의 女婿라는 說 등에 대하여 對話를 나누었고 다시 9일에도 韓國中立化問題는 계속 논의되어

國務長官： 韓國中立件은 특히 憲法에 豫방조항이 없으나 그같은 手段은 美國의 전통적 政略에 반대됨으로 實施与否는 크게 熟考하지 않을 수 없다.

日本公使： 貴國에는 그같은 先例가 없는 것으로 안다.

國務長官： 사모아事件과 義和團事件에는 外國과 協同動作을 취했으나 이는 특별한 이유에 의한 것이다.

日本公使： 그러면 貴國에서는 韓國中立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간주해도 좋은가

國務長官： 러시아로부터 제의되면 大統領께 稟議않고서 결정키는 어렵다. 바크氏의 보고에 따르면 러시아外交官은 직접 貴國에 제의할 것으로 생각된다. 러시아로부터 일찌기 본건에 대하여 貴國에 제의한 일은 없는가

日本公使： 이번 일에 대해서는 먼저 러시아로부터 貴國에 제의하여 貴國經由하여 결국 日·美·露 三國의 協同担保로서 韓國의 中立을 도모하려는 뜻인것 같다. 그렇지만 閣下의 참고할 때까지는 극히 은밀히 말해둔 일이 있다. 昨年 1월이라고 기억되는데 駐日露國公使는 本國政府의 訓令을 갖고 韓國中立論議를 加藤前外務大臣에게 제출한 일이 있다. 당시 加藤氏는 동의를 표명하지 않았으나 혼자서 本案을 거설하지는 않았다. 만약 러시아에서 韓國의 中立과 동시에 滿洲中立을 담보하려는 결심이라면 本案을 결정하는 하나의 方法이 될 것임을 私見으로 러시아公使에게 말하려 했으나 그후 러시아公使로부터는 本案에 대하여 어떠한 말을 듣지 못했으므로 러시아는 滿洲中立에는 反對意見일 것으로 상상하였다.

國務長官： 貴政府는 韓國中立과 동시에 滿洲中立을 한다면 本案을 찬성할 것인가

日本公使： 이는 즉석에서 대답하지는 못하겠다. 滿洲中立에 대하여 加藤氏가 러시아公使에게 말한 것은 오로지 그의 私見으로 러시아가 과연 滿洲中立을 찬성하면은 韓國中立問題와 함께 閣僚會議에 붙었을 것으로 여긴다. 그렇지만 러시아公使는 어떤 속적인 말을 구하지 않고 그후 內閣도 갱질되어 現外務大臣은 滿洲에 관하여 어떠한 의견을 갖고 있는지 모른다. 혹은 현재로서는 本案 協.합을 좋아하지 않을지 모른다. 오직 위와같은 사정이므로 이번 에 러시아로부터 韓國中立問題를 귀국에 제출하게 됨을 보면 우리 現內閣에서도 韓國中立을 단독으로 논의함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

을 貴國을 거쳐 本案을 제출할 의도인 것 같다. ¹⁰⁾

이처럼 러시아의 韓國中立論에 대하여 日本은 滿洲中立論까지 対応擴大시켜 맞서면서 상호간에 침략대상지역이요, 목적인 利益圈의 확보에 불고 늘어지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어느 경우나 韓國을 위한 것이 아니라 韓國의 희생위에서 전개되는 侵略競爭인 것이다. 궁극적으로 러시아는 日本이 韓國에 드러놓은 大陸侵略의 발판을 봉쇄하려는데 대하여 日本은 러시아의 極東侵略의 利權을 봉쇄하려는 행동으로 맞서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특히 日本은 美國의 태도를 예의 주시하며 國務長官과의 問答은 물론 그같은 問答을 하는동안 國務長官의 표정을 주시하면서 對話內容의 表裏不同與否를 포착하는데 전력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점은 밝혀지지 않았다. 駐美日本公使는 다시 國務長官과 맞났을 때 長官은 日本公使에게 러시아가 韓國中立問題에 관하여 언젠가 日本에 제의한 일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日本公使는 昨年 1월 加藤前外大와 러시아公使間의 소식을 전하면서 러시아의 企圖는 韓國中立의 假面下에 滿洲에서 러시아의 행동에 대하여 日本의 干涉을 벗어나려는 행동을 확인시키기에 노력하였다 ¹¹⁾ 고 밝히면서 이같은 사실을 駐美日本公使는 國務長官에게 納得시키기에 대단히 노력하며 러시아는 韓國中立의 掩蔽下에 滿洲에 있어서의 日本의 간섭을 모면하려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國務長官은 러시아의 提議가 있더라도 大統領에게 攄의하여 政府態度를 결정치 않으면 自己個人으로서는 말할 수 없다고하고 美國은

韓國中立에 대하여 약속하면 그다음에 美國行動을 책임지는 전통적인 政略을 포기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韓國中立化案을 全然論題外 (entirely outside the question)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12)

이처럼 日本이 美國의 真意把握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을 때에 웨벨의 서울入京은 日本側의 神經을 더욱 자극한 것 같다. 특히 駐韓日本公使의 報告에 따르면 웨벨이 來韓前에 서울에서는 웨벨의 入京과 동시에 韓露間에 어떤 交涉開始가 있을 것이라는 풍문이 파다하다는 것이다. 中樞院議長 金嘉鎮은 日本公使에게 은밀히 사람을 보내어 그같은 風說을 전하는 동시에 皇帝陛下께서는 웨벨이 어떤 密旨를 가지고 왔는지에 대하여 자못 걱정하는 눈치라고 알려주고 있으며 또 外事課長으로 遣英大使에 수행하여 다소 기밀을 아는 高義敬은 韓國政府内の 러시아派는 웨벨의 來韓機會에 踴躍하여 中立実行試圖者가 있음을 塩川通譯官에게 전달해주고 있다. 13)

이렇게 해서 러시아側의 行動様相은 日本側에 알려지고 있지만 親露派의 勢力挽回策은 특히 웨벨의 來韓과 동행한 李範晉의 아들이 가지고 와서 高宗에게 바쳤다는 書面에서 起因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 書面內容은 확인할 수 없으나 李範晉은 직접적으로 러시아 当局者의 말을 전하기 보다는 러시아의 外交方針을 新聞에 게재하는 등 韓國에서 러시아에 대한 냉담한 반응을 좁히기에 힘쓰고 있음도 말하고 있다. 14)

뿐만 아니라 駐韓日本公使는 러시아의 韓國中立化提議에 대하여 駐韓美國公使와 회담하며 美國側態度의 真意把握에 전력하고 있다.

이때 美国公使는 國務省으로부터 러시아外交官의 韓国中立化 通보의 公文을 받고 그날까지 어떤 交渉이 있었느냐고 日本公使에게 묻고 있다. 이에 대해 日本公使는 은밀히 말하여 대략 2년전에 러시아는 日本政府에 그같은 제의를 하였으나 日本政府는 러시아의 眞意가 滿洲에서의 行動自由를 얻으려는 것임을 간파하고 거절한 일이 있으며 또 滿洲에서의 日本의 정책 즉 門戶開放政策임을 밝히고 그같은 中立計劃은 한국처럼 司法制度의 문란 地方制度의 악습 등 이같은 文明狀況下에서는 도저히 外國人の 生命財産을 위탁할 수 없으며 平和와 秩序保障이 어려워 日本은 韓国中立을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을 전하자 美国公使도 대체로 같은 의견이었다는 것이라 보고하고 있다.

그리고 아울러 韓国中立化의 歷史에 관하여 前年 趙秉式이 遣日使節時에 中立提案은 韓国側으로부터 제의되었으며 美国公使는 그에 앞서서 駐日美公使와 상의함에 同美公使는 단순히 그說을 경청할뿐 실재로 하등 介入치 않았는데 趙秉式은 駐日露公使에 대해서는 美公使는 同意하였다는 뜻을 전한 사실이 있다. 그래서 同美公使는 당황했다는 사실도 아울러 보고하고 있다. 15)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英國側 태도를 알기 위하여 韓国中立化 제의의 大要를 駐韓英公使에게도 말해두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요청하면서 訓令을 기다리고 있다. 16) 이에 대하여 日本政府로부터는 英國政府와 맥도날드氏에게도 타압하지 않았으므로 별도로 訓令할 때까지 秘密에 붙이도록 하라고 訓令하고 있다. 17)

이렇게 韓國中立化問題가 滿洲問題와 같이 논의되자 日本外務大臣은 滿洲中立은 신중한 考料를 요할 사항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첫째 대략 中立이라는 것은 그 前提條件으로서 保砦破毀 등을 예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滿洲에서 현재 保砦 破毀등을 예상치 않을 수 없다. 그런데 러시아가 만주에서 점한 위치는 우리들로 하여금 이와같이 되는 일을 기대하지는 않았다.

두째 支那帝國의 불만을 인정함은 좋은 일이 아닐뿐만 아니라 日本이 聲明해온 政略과 相容되지 않기 때문이라 하였다.

그러나 日本은 러시아의 韓國中立化의 제의를 둘러싸고 특히 美國態度를 알아내려고 갖가지로 노력하였으나 제대로 效果를 견운 것 같지 않다.

이처럼 러시아의 韓國中立提議는 日本의 滿洲中立論으로 맞서는 가운데 日露의 協商이 難航을 거듭하고 또 韓半島에 대한 39度線分割論 등으로 協商이 결렬되고 戰爭으로 치달으면서 實効를 견을 수가 없었다.

1. 日本外交文書卷 35 P.410. 文書番号 196 露國 韓國中立提議= 付在韓米公使トノ 會談ノ件 同 P.411, 文書番号 199 韓國中立問題= 關スル件 등 本文書を 보면 報告속에서 나타나고 있다.
2. 日本外交文書卷 35 P.393 文書番号 182 バグロフ米國ニ於テ日露米 三國共同保障ノ下ニ 韓國中立ヲ提議シタル 趣通達ノ件

3. 日本外交文書卷 35 P.395 文書番号 184 ウェーバ 来
韓ニ関シ注意ノ件
4. 日本外交文書卷 35 P.396 文書番号 185 韓国中立問題ニ関シ
請訓ノ件
5. 日本外交文書卷 35 P.396 文書番号 186 韓国中立問題ハ次ノ
訓令迄極秘トスベキ旨指令ノ件
6. 日本外交文書卷 35 P.397 文書番号 188 韓国中立問題ニ関シ
米國務卿談話ノ件
7. 日本外交文書卷 35 P.398 文書番号 189 韓国中立問題ニ関スル
電信請訓ノ表情稟申ノ件
8. 日本外交文書卷 35 P.399 文書番号 191 韓国中立問題ニ付 國務
長官卜談話 1 件
9. 李鉉淙 韓国開港場研究 馬山日本專管居留地項参照
10. 日本外交文書卷 35 P.399 文書番号 191 韓国中立問題ニ付 國務
長官卜談話 1 件
11. 日本外交文書卷 35 P.403 文書番号 192 韓国中立問題ニ付 國務
長官 1 意向報告 1 件
12. 日本外交文書卷 35 P.404 文書番号 193 韓国中立問題ニ付 國務
長官卜會談統報 1 件
13. 日本外交文書卷 35 P.408 文書番号 195 露國特使 ウェーバ
来韓ノ件
14. 日本外交文書卷 35 P.409 文書番号 195 露國特使 ウェーバ 来韓ノ件

15. 日本外交文書卷 35 P.410 文書番号 196 露国 1 韓国中立提議
= 付在韓米国公使ト 1 会談 1 件 P.411 文書番号 199 韓国中立
問題 = 関スル 露国外交官 1 提案 = 関スル 件
16. 日本外交文書卷 35 P.410 文書番号 197 露国 1 韓国中立提案
英国公使 = 内話 シ 差支 ナキヤ 請訓 ノ 件
17. 日本外交文書卷 35 P.413 文書番号 201 露国提案ノ 韓国中立
= 付訓令 アル 迄 ハ 秘密 ト スベキ 件

五. 露日開戰에 對備한 局外中立宣言

1. 局外中立宣言內容과 日本側反應

日露情勢가 급박해질 때 戰爭에 휩싸이지 않고 우리의 安全保障을 위한 방법으로 局外中立을 선언하였다. 이는 뒤에 日本側에도 駐日韓國公使高永禧를 통해서 日本外務大臣에게도 전달되었다.

이제 먼저 韓國이 局外中立을 宣言한 경위를 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1)

韓國에서 宣言한 局外中立은 李址鎔의 아는바로는 李容翊의 指揮에 玄尙健 기타 仏語教師말켄, 白耳義顧問멜코안뉴 등이 관계된 것으로서 仏國公使館의 손을 경유하여 芝罘로 발송되었다. 李址鎔은 1904년 1월 22일 아침 (즉 英國으로부터 局外中立宣言의 回答이 온 날) 처음으로 高宗의 命에 의하여 위通知의 訓令에 加印할 때까지는 다시 関与하지 않았다. 高宗은 그때 곧 2인을 芝罘에 파견할 뜻을 거짓으로 말하였다. 이 事實에 의하여 보드래도 高宗은 은밀히 日本에 信賴의 필요를 인정하나 만일 露國이 優勢할 경우를 걱정하여 표면상 淸國의 例를 모방하여 局外中立을 布告한 것으로 推知된다는 것이었다.

이와같이 해서 局外中立은 宣言되었다. 그뒤 우리의 中立宣言은 日本側에도 전달되자 日本政府는 이에 대하여 러시아와의 戰爭을 목전에 두고 오히려 이를 강경하게 전개시키고 있다. 이제 그 전말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우리政府에서 日本政府에 통고된

내용을 보면 敬啓者 現接我外部大臣李道宰秘訓 內開 近日衆論紛紛
各新聞紙亦刊登之 大都謂 滿洲之事 日俄兩國各懷意見 不相協洽 終必
失和 此固本政府不信者 其亦必不至於如此 而奈議論者衆 實驚聽聞 設
如其言 則我國介在兩國之間 自不能不予先聲明本國是局外國之議 而守我
之本分 勢必自行保全疆宇 茲望貴公使 秘密照會於日本外務省 而善言之
當此衆口同音之際 輒謂日俄兩國 為滿洲事 意見不同 一朝失和 以兵戎
見 則我韓國介在兩間 大可慮也 然則居安思危 勢不得不思克免戰禍連累
之方 而予聲明為局外之國 自不妨以萬必不然之事而虛作一或然之想 應請
日俄兩國政府 俱以本國為局外之國 將來事或不已 而出於戰 則一切戰事
並皆不於本國借境假道而免軍旅涉於韓地 明示回文籍為約據 以保全我之疆
宇 宣諭我民 無干兩國戰事 同守本分 而敦邦交 益深和睦諒此迅辦 隨
即秘報 為要等因 茲特秘密照會 請煩貴大臣 亮裁覆 俾得秘報我外部大
臣 至切禱盼 肅此敬具

光武七年九月三日

大韓特命全權公使 高永喜

大日本外務大臣男 爵 小村壽太郎 閣下²⁾

이 文書를 접한 日本에서는 文書의 欄外에 註記하여 「9月3일
韓國公使持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여기서 보면 日露間에 意見
不一로 인하여 싸우면 韓國은 양자사이에 개재하여 대단히 걱정된
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같은 위험을 예상하고 韓國이 戰禍에
연결되는 것을 사전에 면하고자 「局外之國」이 되기 위하여 聲明
하게 되었다는 배경을 설명하고 戰爭時 우리의 保全을 기하고자

우리 국민에게 宣諭하여 양국 戰爭에 관계하지 말도록 하었다고 밝히면서 日本側의 回信을 바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日本側에서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도 아니었다. 이때 小村外務大臣이 駐韓日本公使에게 訓令한 것을 보면 韓國公使가 오늘 本大臣을 방문하고 中立問題에 관하여 日本政府의 保障을 요구하는 主旨의 公文을 手交한데 대하여 本大臣은 그것은 중대한 案件이므로 단독히 속고한 후 회답하겠다고 대답하였다고 밝히고 이어서 龍岩浦問題에 대하여 日本側의 입장을 설명하고 러시아의 요구대로 龍岩浦의 개방을 러시아에 허용하면 중대한 결과가 일어날 것임도 아울러 말했다고 밝히고 있다. 3) 그리고 이어 韓國의 中立宣言에 대하여 駐韓日本公使에게 韓國政府에서는 滿洲問題의 결과 日露兩國間에 평화의 파열될 것을 우려하고 미리서 日本政府가 韓國을 局外中立國으로 인정한 것을 요청하여 온 것이라고 4) 밝히면서 韓國政府에 回答할 내용으로서 대략 다음과 같이 訓令하고 있다. 즉 滿洲問題가 속히 妥結을 보지 못함을 日本政府가 韓國政府와 함께 걱정하는바이나 時局에 관한 衆論은 억척에서 나온 것으로 事實의 真相과 동떨어진 것이며 소위 風聲鶴唳에 類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日本政府는 그 傳來의 政綱을 쫓아 평화유지와 修睦增進에 힘쓰고 또 다른 余念이 없기 때문에 지금 兵戎을 論하며 中立을 말하는 것은 오히려 상서롭지 못한 것이며 또 자못 時期에 부적당한 것으로 여겨지는바 위의 취지로 日本政府가 韓國과 아울러 東亞全局을 위해 진력하고 있는 微意까지도 충분히 이해하도록 하

도록하여 줄 것을 도리어 요망하고 있다.

위의 내용은 동시에 日本側이 韓國政府에 보내온 公式回答의 내용과 같은 것인데 이는 韓國局外中立宣言에 관하여 日本外務大臣이 駐韓日本公使 林에게 보내진 내용과 같은 것인바 日本側이 취한 전후태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5)

滿洲問題에 관한 日露關係 파국의 경우를 예상한 韓國의 局外中立問題에 관하여 9월 3일 駐日韓國公使高永禧로부터 照會書를 받고 回答書를 交付함과 동시에 本件과 같은 重大問題는 항간의 噂설에 의하여 결정될 수 없다고 하면서 변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도 또 日本外務大臣이란 개인의 자격으로 대략 다음과 같이 高永禧公使에게 말했음을 아울러 駐韓日本公使에게 밝히고 있다. 즉 韓國中立問題에 관해서는 러시아에도 特使를 보내어 같은 交渉을 하려는 것 같다. 만약 露國이 이에 대하여 韓國에 맞추려는 回答을 주려는지도 알수없는 일이다. 그러면서 約束의 妥結과 이의 実行과를 스스로 別問題이므로 쉽게 약속하든지 쉽게 이를 파괴하든지 사실에 있어서 하등의 연는바 없을 것이다. 이점에 대하여 미리 注意를 두지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어 日本側의 태도를 계속 말하고 있는데 日本도 종래 他國의 交戰에 지음하여 局外中立을 宣言한 것이 한두번이 아니다. 그때마다 日本은 만약 交戰國이 中立國인 日本의 權利를 유린하려 한 경우에는 단연코 스스로 이를 배척할 결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戰時國際法에 입각한 中立宣言으로서 이번 韓國政府의 제의와는

그 성질이 분명히 다른 것이다. 그렇지만 中立國이 되려는 이상 스스로 이를 유지할 決心과 實力과를 요하는 것이 첫째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韓國의 最大急務는 國力の 充實, 國家의 富強을 도모하는데 있다. 그리고 이 목적을 달하기 위해서는 모름지기 먼저 첫째 皇室의 安固, 둘째 財政의 刷新 셋째 兵制의 改革을 충실히 하지 않을 수 없다. 日本은 당초부터 韓國現皇室의 永久存続을 옹호할것에 確固不動의 각오이며, 이 점은 물론이요, 財政 兵制의 두가지에 관해서도 한국에서 日本의 원조를 희망하면 日本은 기꺼히 응할 것이라 말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日露戰爭에 휩싸여 희생되는 것을 사전에 막으려고 日本으로 하여금 우리의 局外中立을 인정하고 협조를 요청하였지만 오히려 日本은 한국의 內政改革에 협조하겠다고 하면서 더욱더 간섭할 구실과 행동을 적극적으로 표시하고 있다.

이는 1903년 9월 하순에 접어들면서의 일이지만 그뒤 露日間의 형세는 날로 악화되는 과정에 놓여 있었다. 그런 영향이 日本政界나 言論界에도 영향을 주었으리라 여겨지지만 1904년으로 접어들어 日本言論이 韓國中立을 보는 견해도 日本政府의 태도와 거의 같은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서 韓國의 中立宣言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日本의 大朝新聞을 보면⁶⁾ 「우수광스러운 朝鮮의 中立宣言」이란 題下에서

「朝鮮의 中立宣言은 실로 近來의 우수광스러운 것이다. 駐仙朝鮮公使閔泳瓚은 歐羅巴의 한가운데서 아직도 이같은 우수광스런 일

을 되풀이하며 말하기를 日露開戰의 경우 朝鮮은 嚴正中立을 지킬 예정이므로 단연코 兩國의 會戰地되는 것을 不許한다. 만약 이때문에 朝鮮의 主權을 침해당하는 일이 있으면 列國에 愁訴할 예정이라고 우스꽝스러운 것도 이에 이르면 다소 가엽게 여겨진다.

그렇게 되면 支那는 流石에 훌륭하다. 형식상 列國에 대하여 嚴正中立을 宣言한 일이다. 日露開戰이 시작되면은 中立은 말뿐이지 행해질 수 없음은 명백히 알고 있다. 日本과는 당초부터 함께 될 것이 아니지만 스스로 干戈를 갖고 主權을 지킬만한 정도의 用意는 충분히 되어있는 모양이다. 時宜에 따라서는 露兵을 滿洲로부터 추방한다는 계획도 있는듯 하다. 아주 대단한 元氣이며 자칫하면 우리 當局者로부터도 생각밖의 힘이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이로서 만약 開戰되면 支那 스스로도 같이 일어나서 露國에 당한다고 하면 露仏同盟에 의하여 프랑스가 러시아에 加勢할 것인가 하는 의문은 곧 일어날 것이지만 런던에 있는 프랑스 一等書記官은 縱的인 淸韓兩國이 日本과 공동하여 露國에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支那나 朝鮮은 露仏同盟條約中の 소위 列國으로는 認定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때문에 仏國이 加勢하는 것과 같은 일은 결코 없다고 말했다 한다」

그리하여 우리나라가 日露의 戰地化함을 결코 불허한다고 한데 대하여 日本은 당초부터 韓國의 中立化宣言에 대하여 비방하며 비웃기까지 하고 있다가 드디어는 우리政府가 선언한 局外中立化를

無効로 처리하려는 것을 당시 日本新聞報導에 의해서 알 수가 있다. 즉

韓國은 앞서 中立을 宣言했으나 列國의 저이 태반이 이를 진실하게 받아 드리는 자 없는 모양이다. 도대체 中立을 지키기에 충분한 實力없이 中立을 宣言해도 何等의 効果없음은 이미 本紙에 記한데로이며 公法上으로 말하면 가령 中立을 宣言해도 만약 繫争國의 一方의 軍隊가 그 領土에 入할때 이를 防止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와 동시에 이미 그 國의 中立은 無効가 되는 것으로서 韓國은 현재 이같은 事情下에 있다. 하물며 보통 다른 中立國의 경우와는 달리 韓國은 그 國家自身이 日露爭議의 日的物이라는 데서 결코 이로서 無關係의 제 3 國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차재에 韓國의 択할 바는 露國과 더부러 日本에 對敵하든가 日本과 더부러 露國에 對敵하든가 二者択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今後의 되어가는 趨勢가 日本과 同盟하여 露國에 當하는 形勢에 서기에 이른 것이다.⁷⁾

이처럼 韓國의 中立宣言에 神經을 곤두세운 日本은 노골적으로 우리나라 侵略을 밝히면서 韓國은 日本과 러시아의 戰爭目的物인 만큼 中立이 될 수 없으며 紛争國인 日本이나 러시아의 軍隊가 侵入했을 때 韓國軍으로서 능히 방어할 軍事力이 모자란다. 그러므로 中立維持가 곤란한바 이제 韓國은 韓露同盟으로 日本을 공격하든가, 韓日同盟으로 러시아를 敵對視하든가 兩者択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韓國이 戰爭의 참화에서 벗어나려는 태도와 정신을 日帝

侵略으로 뒤엎으면서 한편으로는 韓日同盟의 성격인 韓日設定書를 강요하여 공동으로 러시아에 對敵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래서 우리 政府의 局外中立宣言은 日本이 근본부터 부정하면서 對露戰爭의 수행을 위해 우리에게 協力을 강요하고 또한편으로는 淸의 동향은 대단히 신중하게 다루어가고 있다. 그리하여 될 수 있는대로 淸國을 中立化시키기에 苦心하고 있다. 이때 日本의 新聞報導들을 보면 日露兩國의 충돌시에는 淸國으로 하여금 어떠한 태도를 취하게 할 것인가는 日本政府의 가장 慎思熟慮할 바라 말하고 있다. 이를 위해 日本政府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淸國으로 하여금 中立態度를 지키게 함이 긴요한 일이라 믿고 淸國政府에 권고함은 물론, 駐美·英·獨·仏·澳·伊國日本公使에 그같은 내용을 訓令하여 外交적으로 노력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그 결과 美國 英國 獨逸의 협조를 얻고 戰爭地域인 滿洲를 제외하고는 淸國의 局外中立이 보장된다고 하였으며, 그 결과 日本으로서는 淸國의 無限한 民衆과 資源이 러시아에 의하여 活用되는것을 사전에 막을 수가 있었고 이제 남은 것은 戰爭布告뿐이었던 것이다. 最終적으로 淸國에서도 局外中立을 일본에 알려 왔으며 다만 滿洲의 盛京及 興京은 陵寢宮殿의 所在地이므로 當該軍으로 하여금 경건히 지키도록 하겠다면서 戰爭地域을 최소한도로 좁히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던 것이다. 8)

이같이 日本은 우리나라를 戰爭의 발판으로 利用키 위해 局外中立宣言을 우수광스러운 것으로 비유하면서도 淸國에 대해서는 人

的 物的資源이 동원되어 러시아가 活用할까보아 전력을 다하여 事
前에 막고 있는 것이다.

1. 日本外交文書卷 37 第 1 冊 P.314-315 文書番号 340 日韓密
約未締結事情報告並 = 韓國 1 中立聲明 = 對 슨 我方回答 = 付請訓 1 件
2. 日本外交文書卷 36 1 冊 P.723 文書番号 697 韓國 1 中立保障
要請 1 件 秘第 1 号
3. 日本外交文書卷 36 1 冊 P.723 文書番号 698 在本邦韓國公使
ヨリ 同國 1 中立保障要請 1 公文提出 1 件
4. 日本外交文書卷 36 1 冊 P.724 文書番号 700 韓國局外中立
= 關シ回答 1 件 明治 36 年 9 月 26 日
5. 日本外交文書卷 36 1 冊 P.725 文書番号 701 韓國局外中立 =
關 슨 件 또한 이 무렵 日本은 韓國의 中立宣言을 무마하고
日本例에 協助를 하게 하기 위하여 韓國皇帝를 日本에 밀착
시켜두기 위하여 駐韓日公使는 내용을 外務省에 요구하고 있
다. 그것은 韓國皇帝가 가장 싫어하는 亡命者에 관하여 만
족한 견제를 加하고 財政을 補完키 위하여 巨額의 借款을
빌려주며 상당한 運動費 즉 政治資金을 韓帝의 勢力者에 줄
것 등 세가지를 들면서 여기에다가 對露交涉에 있어서 영향
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京城駐屯日本守備隊의 倍增을 요
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駐韓日本使記錄 1903 年 日韓
密約附 韓國中立>

6. 新聞集成 明治編年史 12 卷 P.179 明治 37 年 2 月 4 日
7. 新聞集成 明治編年史 12 卷 P.187 明治 37 年 2 月 10 日
8. 新聞集成 明治編年史 12 卷 P.192 明治 37 年 2 月 19 日

2. 局外中立宣言探索하는 日帝

日本은 韓國政府가 日露間의 협약한 국제정세를 앞두고 局外 中立을 宣言한데 대하여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列強의 반응과 그 결과를 탐색하기에 전력하며 韓國政府의 動靜을 탐정하는데 적극적인 行동을 취하였다.

1904 年 1 月 21 日 小村外務大臣이 在韓國 林公使에게 韓國의 中立聲明電報의 發送者를 탐색하도록 訓令이 내려지고 있는데 中立聲明電報는 오늘 21 日 오전 11 時 芝罘發로서 大分히 李學均이 旅順에 가서 極東總督과 密議한 위에 또는 旅順에 가는 도중에 發送된 것으로 여겨지는바 이에 관해서는 懸案의 密約(이는 韓日議定書를 지칭하는듯함) 調印을 위해서도 李址鎔에게 확인하여 電報報告하라고 訓令하고 있다.¹⁾ 이에 대하여 1 月 22 日 在韓林公使로부터 小村外大에게 보낸 전보에 의하면 韓國의 中立聲明을 芝罘에 電報發送者에 관한 것이 보고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李學均은 아직도 旅順으로 출발할 것 같지않다는 것이다. 현재 그의 旅順行은 中止시켜 놓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小村外大의 電報와 같이 韓國이 中立聲明의 通告를 芝罘에서 발표한 것은 大分히 他人의 소행인 것같다. 그리고 中立聲明의 發電者를 실피

는 것은 대단히 필요한 것으로 믿고 訓令과 같이 密約調印後 外
 部大臣에게 확인키로 하며 또 한편으로는 在東京韓國代理公使로 하
 여금 韓國外部大臣에 대하여 芝罘發 外部大臣의 訓令은 과연 正當
 한 것인가 芝罘에서 聲明發電한 理由를 電問시키며 그 결과를 林
 公使에게 알려주면 서울에서 事情探索에 轉하겠다고 보고하고 있다²⁾
 어떻게 日本側은 어떻게 해서든지 韓國皇帝를 日本側에 연결시켜
 놓으려는 日本의 對韓政策은 꾸준하게 취해지고 있지만 日露間의
 情勢가 급박해짐에 따라서 그같은 생각은 더욱 절실하게 느껴졌던
 것 같다. 그때문에 韓國政府와 政界動向은 駐韓日本公使를 통해서
 수시로 보고 되었다. 그 목적은 日露開戰時에 한국이 어떠한 行
 動을 취할 것인가를 事前에 알아내고 거기에 따라 대응조치를 취
 하려는데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1904년 8월 18일에 駐韓日本
 公使林으로부터 小村外務大臣에게 報告한 내용에 따르면 우리 宮中에
 出入者의 內報을 통하여 알아낸 기밀이라면서 韓國皇帝는 宮内官으
 로서 佻語에 능숙한 玄尙健을 프랑스에 파견하려는 것이고 그것은
 어떠한 密旨를 휴대케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報告하고 있다. 이
 는 日露關係가 파탄의 지경에 이르면 韓國政府는 자신의 保護를
 프랑스에 의뢰하려는 密旨일 것이라는 풍설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
 다. ³⁾ 이어 19일에는 玄尙健의 行動을 탐지하는데 玄尙健과 잘아
 는 日本人으로 하여금 玄尙健의 使命을 확인시키기에 따르면 玄는
 佻國에서 駐佻韓國公使와 만나 和蘭으로 同行하여 平和會議員과 會
 見하고 日露開戰의 경우에 있어서 韓國의 地位와 開戰에 지음해서

中立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자연히 国境内를 兩國軍隊에게 유리당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 損害에 관하여 미리 研究를 구한 때문이라는 요지를 말하였다. 지금 이 사실을 말하는 日本人은 玄의 身上에 관계있는 자이다. 또 駐仏 韓國公使는 中立國問題에 관하여 韓國皇帝의 內旨를 傳達한 일이 있는자인바 이점도 參작하기 바란다는 것이었다⁴⁾ 그리고 다시 21 일자로 玄尙健의 파견에 대하여 情報報告한 내용에 따르면 玄尙健은 使命을 위해 오늘 露國汽船便으로 旅順에 향하여 출발, 시베리아 鐵道로 먼저 露京에 도착할 예정이다. 玄尙健의 使命에 관하여 그후 확인한바에 따르면 19 일자로 보낸 使命外에 韓國皇帝로부터 慰問에 대한 密書를 傳達하고 러시아의 태도에 관하여 보고할 것도 명령되어 있는데 이는 玄映運이 日本에 渡航한 것과 같은 使命을 떠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⁵⁾ 그러면서 韓國皇帝의 密使의 행동에 대하여 偵察報告하도록 訓令까지 발하고 있다. 이는 1903 년 8월 25 일 小村外相이 Petersburg 의 栗野公使에게 보내지고 在 仏日本公使에게도 발해지고 있는 것이다⁶⁾

이와같은 日本公使의 情報探索은 계속되고 있다. 滿洲問題를 중심으로 日露開戰說에 직면한 高宗은 戰爭時 兩國이 韓國領土를 유리하지 않고 韓國으로 하여금 局外의 地區로 삼을 것을 승락시키기 위하여 지난 21 일 玄尙健과 함께 러시아에 간 公使館 參書官과 지난 25 일 日本에 향해 출발한 禮式院參書官 高義誠에 각각 별도로 위와같은 使命을 띠고 駐日公使 및 駐露公使로 하여금 이

에 관하여 交渉을 개시케 하였다. 이에 대해서 韓國에게 무엇인가가 承諾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기회에 韓國에 있어서 日本의 地位를 한층 공고케 할 방법을 취함은 극히 분명한 일이라는 보고와⁷⁾ 함께 韓國側에서 中立保障을 위해 駐日·駐露公使에게 발해진 訓令을 附記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본다면 아래와 같다.

第 268 号

本官의 第 266 号電報에 관하여 本官은 機密을 守할 約束下에 英公使로부터 右에 관하여 外部大臣으로부터 駐日·駐露兩公使에 訓令寫를 得하고 또 右訓令의 草案은 陛下의 秘密命令으로서 余儀 없이 總稅務司에서 起草한것임을 承知하였다. 訓令의 要點은 前電과 같으며 韓國의 中立을 破하지 않고 領土를 유린하지 않는다는 保證을 速히 各國別政府로부터 得할 것에 努力할 것을 命하고 있다.⁸⁾

이는 在韓日本公使로부터 小村外大에게 보고된 것이다. 이의 入手經緯를 보면 韓國外部大臣으로부터 駐日·駐露韓國公使에게 訓令된 英訳寫本을 機密을 지킨다는 약속하에 英國公使로부터 入手한 것이었다.⁹⁾

그리고 한편으로 駐韓日本公使林은 계속해서 韓國皇帝의 密使인 玄尙健의 使命에 관하여 情報을 보고하고 있다. 즉 玄尙健의 使命中에는 얼마간의 借款을 歐洲에서 얻으려는 것도 包含되어 있다는 說이 나돌고 있다. 이미 보낸 제 244 号 電報의 借款談에는 玄尙健이 관계하고 있음은 의심할바 없는바 이 說도 또한 다소

근거가 없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¹⁰⁾ 이리하여 유럽으로 떠난 玄尙健의 뒷소문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면밀하게 보고하며 中立宣言問題와 對유럽借款問題 등 韓國政府의 동향이 日本政府에 상세히 보고되었다. 뿐만 아니라 中立宣言問題와는 달리 韓國政府가 러시아와 접근하는 사실도 자세하게 보고되고 있다. 즉 1903년 10월 29일에 駐韓日本公使林은 韓國의 宮内相이 알렉시프總督에게 보내는 密書까지 탐지하여 日本外務大臣에게 보고되고 있다. 淸日戰爭後 우리國內政界는 三國干涉과 俄館播遷親露派의 대두 등으로 排日親露傾向이 강했는데도 러시아에 가는 韓國皇帝의 密書內容이 日本으로 알려지고 있으니 사실상 우리政府의 機密이란 것이 없다고 해도 지나친 것이 안될만큼 되었으니 우리의 獨自的인 행동이 얼마나 어려워졌는가는 쉽게 짐작이 된다. 어떻던 보고된 密書內容을 보면 金仁朱가 旅順에 간 결과로서 韓國皇帝는 宮内大臣으로 하여금 알렉시프에게 보내는 密書를 가지고 가게 했는데 密書中에 日露兩國의 交誼艱難해지며 韓國은 兩國間에 介在하여 事態의 妥協되는바를 헤아릴 수 없다. 더욱이 自衛力이 결핍하여 심히 不安하다. 그러므로 특히 露國皇帝에 주청하도록 太守에 위촉하니 兩國皇室의 友誼를 중히하여 不虞에 대비할 방법을 취할 것을 희망한다는 풍설이 있다고 보고하면서 이에 관하여 眞否探偵中이라는 것이다. 마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추측컨대 韓國皇帝는 日露衝突의 경우를 예상하고 만약 러시아가 優勢를 占한다면 러시아에 信賴케

해두지 않으면 억압을 받을까 염려되는 데서이고 이에 反하여 日本이 우세하다면 日本에 반항해도 러시아와 같지는 않을 것이라 믿고 있기 때문이라는 요지라는 것이다.¹¹⁾ 다시 말해서 日露兩國中 어느쪽이 우세할지 몰라서 사전에 계책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日本側은 본 것이다. 그리고 서울駐在 野津少佐가 參謀總長에게 보내는 전보에서도¹²⁾ 韓國宮相으로 부터아렉시프 總督에게 密書가 보내졌는데 그 내용은駐韓日本公使가 보내는 것과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지만 日本公使와 駐韓日本軍部가 보내는 두가지는 결과적으로 우리의 비밀이 너무나도 쉽게 모두가 日本의 情報網에 의하여 탐지되었으며, 그러기에 우리政府의 기밀사항까지 모두가 거이 날날이 日本에 알려지고 그것은 다시 對韓政策의 수렵으로 활용되어 우리의 곤난은 가중된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日帝가 그토록 신경을 곤두세우던 玄尙健은 1904년 1월 11일 露艦와리야구号便으로 仁川으로 帰國하여¹³⁾ 列車便으로 서울에 들어왔던 것이다.

어쨌든 韓國의 中立宣言은 누구보다도 日帝에게 커다란 충격을 준 것이다. 駐日 韓國代理公使는 中立問題로 日本外務大臣에게 面會를 요구하였으나 日本은 이를 연기하고 있다. 이 이유는 駐韓公使가 이미 韓國과 교섭중인 密約 즉 韓日議定書와 깊은 관련이 있으므로 연기하여 오면서 이제는 今明間에 面會치 않을 수 없게 되었는데 그때에 日本側 意思를 토로할 것인가 또는 표시할 것인가 하면서 駐韓日本公使의 의견을 묻고 만약 日本側 意見을 표시할 경우에는 昨年과 같이 「中立을 論할 경우가 아니라고 생각된다」고

대답할 생것임을 밝히고 있다. 14)

이처럼 日本外務省의 意思是 韓國의 中立宣言과는 달리 한결음
나아가 韓日議定書의 調印을 서두른 것이다. 駐韓日本公使가
1904년 1월 24일자로 外務大臣에게 보고한 것을 보면 더욱 뚜렷
하다. 日本側은 密約案 즉 韓日議定書를 예정대로 어제 밤에 調
印 交換할 수 없었던 이유를 탐지하기 위해 오늘 아침 國分書記
官을 李址鎔에게 보냈는데 이때 李址鎔은 國分에게 어제 謁見할
때에 高宗陛下的 의향에 변화가 없음을 알았다. 陛下는 嚴正中立
을 日本에 통지한데 대한 日本政府의 回答을 얻은 다음에 議定書
를 調印交換할 것을 명령하였다. 그래서 調印이 끝난 密約書를
陛下에게 보였으나 어제 저녁은 約書交換을 할 수 없었던 사정을
말하며 또 中立通知에 대한 日本政府의 回答을 얻는다면 내일이라
도(25일) 約書交換을 할 수 있다는 뜻으로 대답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國分은 다시 李根沅을 訪問하고 그의 결심을 확인하자 그
는 李址鎔보다도 그 결심이 도리혀 굳어 있으며 李址鎔이 어제
오후 調印濟 密約書를 陛下의 天賢에 보여드리자 아직도 그 交換
을 주저하는데 그 이유는 그以前에 局外中立에 대한 日本政府의
回答을 얻을 필요외에 李容翊보다도 더 강한 반대의 권고를 받고
있는 뜻으로 말하고 오늘 오후 다시 李址鎔에게 面設後 강하게
권고할 것을 약속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閔泳喆에 대하여서도 萩原書記官을 보내어
그의 決心을 확인시켰는데 閔은 李根沅과 같이 충분한 결심을 갖

고 있다. 그리고 李址鎔이 어제 저녁 예정대로 密約交換을 할 수 없었던 사정을 변명하면서 자기도 오늘 오후 李址鎔에게 강력히 권고할 뜻을 약속하는 동시에 李容翊은 차제에 日本과 제휴함은 러시아의 怒여움을 초래할뿐이며 韓國獨立을 위태롭게 한다는 뜻으로 陛下에게 아뢰며 또 陛下의 뜻을 받은 것같이 들리며 직접 간접으로 李址鎔등 3명을 抑制하고 있다는 사정까지 말하고 있다. 요컨대 그들 3인중 李址鎔은 성질상 李容翊으로부터 직접 反對勸告를 받은 것이므로 日本公使는 다른 2인으로 하여금 李址鎔의 결심을 재촉하는데 尽力中이다. 그런데 지난번 보고한대로 目下狀態로는 韓國皇帝가 日本을 信賴치 않음은 거의 의심의 여지가 없는바 日本政府는 韓國內에서 어떤 行動을 취함은 密約의 有無에 상관없이 급히 단행함이 時宜에 相當할 것 같다는 것이다.

反對로 한국에 대하여 決行着手에 시간이 끌면 韓國皇帝의 마음을 도리어 다른 방향으로 돌려 密約은 드디어 不成立으로 끝나고 종전까지 다소 日本을 信賴하던 韓國官吏들도 주저할 걱정이 생긴다. 이점 거듭 고려하기 바란다는 것이다.

또 韓國으로부터 局外中立宣言의 公的인 通知에 대해서는 李址鎔이 희망하는 것과 같이 속히 韓國政府에 대하여 「아크놀레지」하도록 訓令해주도록 駐韓日本公使는 요망하고 있다. 그리고 局外中立의 承認과 이번 密約締結과는 표면상 모순한 것같으나 그들은 公公然하게 이것은 비릴이라고 한다.

또한 그것은 앞서 결정된 것으로서 만약 密約이 成立되지 않을

경우에는 표면상 局外中立通知를 바탕으로하여 러시아나 기타 日本의 反對側에 대하여 信賴를 막을 수 있다고 믿고 있다. ¹⁵⁾

이처럼 韓國皇帝가 局外中立을 日帝로 하여금 인정케하고 그 다음 韓日議定書의 調印을 해주겠다고 하였지만 뜻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日帝의 태도는 韓國의 局外中立宣言을 예의 주시하면서 情探에 전력하고 있다. 특히 局外中立을 선언하면서도 러시아와 가까워지는데 대해 더욱 날카로운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즉 韓國이 鴨綠江岸에서의 實例처럼 러시아 한쪽에만 편의를 주는동안은 日本政府로서는 中立通知의 승인을 하기 어렵다는 뜻을 韓國政府에 통지할 때는 그것은 韓國朝廷에 새로운 자극을 주는 결과가 될 터이니 이점 참고하라고 駐韓日本公使는 보고하면서 韓國에서의 中立派는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며 그들의 勢力은 영속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있다. ¹⁶⁾ 그리고 韓國中立에 관해서 李容翊은 현재 자기를 (日本公使) 방문했을때 그의 생각은 당혹하며 다소 후회하는듯이 보였다. 그러므로 日本政府의 형편에 따라서는 回答을 쓸 필요가 없다. 대국적으로 볼 때 韓國의 태도여하에 불구하고 속히 決行할 것을 희망하며 韓國態度는 日本이 實力을 加함에 따라 日本側에 기우러질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¹⁷⁾ 이렇게 韓國의 태도는 優勢한 실력에 의하여 지배될 것은 말할것도 없다. 時局에 대한 韓皇帝의 태도에 대해서도 高宗은 中立宣言에 의하여 韓國의 지위가 안전할 것으로 보며 특히 無為政策을 취하며

外交上の懸案을 비롯하여 장차 착수하려는 内治의 改革도 당분간 그대로 둘 것으로 보인다고 한국정세를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閔泳喆 李根沢 李址鎔 3명은 林公使의 간곡한 권유에 따라 現狀維持를 결정했으나 아직도 内心으로는 日本政府의 결심을 의심하는 점이 있다. 또 어느때 反對派의 優勢를 맞날지를 顧念하면서 李址鎔은 미발히 李容翊에게 접근하며 李根沢은 歐洲駐在公使에 곧 임명될 것이며 閔泳喆은 이미 駐淸公使에 임명되었다는 것이다. 18)

이처럼 韓國政府는 局外中立을 선언하고 日帝의 妨害에서 京城中立을 벗어나려고 힘쓰고 있으나 여의치 못하자 태도를 바꾸어 추진하였다. 즉 玄尙健은 仏國公使館에 빈번하게 출입하며 요지음 새로히 宮中評議에서 論議된 京城을 局外中立地로서 各國에 승인시키고자는 의론에 관하여 玄尙健은 陛下의 命에 따라 仏公使를 설득하며 露公使 또는 仏公使로 하여금 京城中立의 제의를 하려고까지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露公使는 자기들의 입장을 생각하고 그같은 제의를 하기 어렵다고 하였지만 李根沢은 高宗의 命에 의하여 특히 兩國公使에게 제의하고 상의하기에 이른 것이라 19) 駐韓日本公使는 보고하고 있다.

이처럼 韓國의 局外中立宣言은 약한 国力속에서 제대로 실현 가능성이 없게되자 급박해진 露日戰爭에 끝까지 휘말려들지 않기위해 이제는 京城의 局外中立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日本側 태도에서 분명해진 것처럼 日帝侵略政策으로 인하여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것이다.

1. 日本外交文書卷 37 P.312 文書番号 335 明治 37 年 1 月 21 日

韓国 1 中立声明電報 1 發送者探索方訓令 1 件 訓令第 32 号

2. 日本外交文書卷 37 P.313 文書番号 337 明治 37 年 1 月 22 日

韓国 1 中立声明 1 芝罘電報發送者=關スル件 報告第 73 号

이와 관련하여 芝罘駐劄의 水野日本領事로부터의 보고에 따르면 켄쑤겐이 1월 28일 旅順에서 와 露仏領事에게 密會하며 29일 다시 旅順으로 갔다. 켄쑤겐은 앞서 李址鎔이 宮中에 불러가 中立通牒을 各國에 發하도록 命을 받을 때 그 通牒案에 署名時 高宗은 켄쑤겐을 仁川에 特派하여 그 곳에서 電報케 하였다. 그후 켄쑤겐의 행위에 대해 李址鎔은 회의적이었다. 그런데 이 中立問題의 通牒書를 갖고 芝罘에 密行한 것은 1월 22일 前이며 李建春임이 분명하며 켄쑤겐의 旅順行은 다른 목적이며 또는 러시아의 態度를 탐색하기 위해서 또는 다른 密旨를 휴대한 것으로 보인다며 探索中임을 보고하고 있다. 日本外交文書卷 37 第 1 冊 P.319 文書番号 348 旅順 芝罘=赴ケル 韓国密使 1 使命 =關スル件

3. 日本外交文書 36 卷 1 冊 P.718 明治 37 年 8 月 18 日 文書番号

690 玄尙健遣外使命情報 1 件

4. 日本外交文書 36 卷 1 冊 P.718 文書番号 691

5. 日本外交文書 36 卷 1 冊 P.719 文書番号 692

6. 日本外交文書卷 36 1 冊 P.719 文書番号 693 韓帝密使 1 行動

=付偵察報告方訓令1件

7. 日本外交文書卷36 1冊 P.720 文書番号694 韓帝密使来朝=際シ施策方具申1件
8. 日本外交文書卷36 1冊 P.720 文書番号694의 附記 韓国1中立保障要請=関シ在日及在露公使1同国公使=与ヘラレタル 訓令1件
9. 日本外交文書卷36 1冊 P.720-721 文書番号695와 附属書 이때 同封된 英訳写本 도 있다
10. 日本外交文書卷36 第1冊 P.724 文書番号699 韓帝密使玄尙健1使命=関スル情報1件
11. 日本外交文書卷36 第1冊 P.703 文書番号703 韓国宮相ヨリ 「アレキシエフ」 総督宛密書=関スル件
12. 上掲書 附記
13. 日本外交文書卷37 第1冊 P.310 文書番号330 韓帝密使玄尙健帰国1件
14. 日本外交文書卷37 第1冊 P.314 文書番号339 韓国中立問題=付我方1意見開示シ差支ナキヤ都合問合1件
15. 日本外交文書卷37 第1冊 P.314-315 文書番号340 日韓密約未締結事情報告並=韓国1中立声明=対スル我方回答=付請訓1件
16. 日本外交文書卷37 第1冊 P.317 文書番号343 韓国中立声明=対スル措置=付意見具申1件

17. 日本外交文書卷 37 第 1 冊 P. 317 文書番号 345 韓国 1 中立
 声明 = 对スル我方措置並 = 大局 = 对シ決行方稟申 1 件
18. 日本外交文書卷 37 第 1 冊 文書番号 346 大局 = 对スル意見 1
 提出差控方 1 件 P. 318 文書番号 347 韓帝 1 時局 = 对スル態度並
 = 總稅務司 1 意見及 親日要人 1 動靜等報告 1 件
19. 日本外交文書卷 37 第 1 冊 P. 319 文書番号 349 京城中立 1 為
 1 策動韓帝播遷說並 = 日露國交斷絶 1 報道 = 關スル件

3. 局外中立宣言과 列強의 反應

우리나라는 露日開戰의 필연적인 사실을 앞에 놓고 局外中立을 宣言하여 전쟁에 휩싸이는 것을 사전에 防止하려고 노력하며 世界各國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으나 만족할만한 힘의 保障은 받지 못하였다. 이제 그 가운데 한두나라의 반응을 보면 짐작할 수가 있다. 특히 1902년 英日同盟의 당사자인 英國態度를 보면 宣言을 알았다는 정도이다.

韓국의 中立宣言은 여러나라에서 反應을 보였다. 英國公使는 本國政府의 訓令을 받고 우리政府에 알려왔다. 즉

大英帝國欽命駐劄漢城辦理公使大臣兼總領事官朱遜典 為照會事 照得
 現承本國外部大臣公爵羅時多穩電訓內開 接准大韓國外部大臣電照內開
 苦成開戰 本國維持中立等因 本部大臣深庸銘感 以此意轉照貴大臣等因
 茲以備文照會 請煩查照 須至照會者¹⁾

이 내용은 우리의 中立宣言을 꼭 그대로 지지하겠다는 명백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대로 국제적 파급을 들 수가 있다. 이에 대하여 外部大臣臨時署理와 憲兵司令官李址鎔의 명의로 回謝의 文書가 발송되었다. 2)

이와같은 내용의 것은 駐韓義太利公使로부터도 보내왔으며 이에 감사하다는 우리정부의 回答이 보내지고 있다. 3)

이렇게 제 3국의 회답은 명백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中立宣言을 알았다는 정도이므로 外交面에서 크게 뒷받침이 되었으리라 여겨지지는 않는다. 특히 英國側의 回答같은 것은 우리정부에서 李址鎔이 韓國의 局外中立을 승락하였다는 것으로 해석한 모양이나 日本側은 사실과 다름으로 駐韓日本公使가 韓國政府에 대하여 辨駁한 것으로 여긴다고 4) 日本外相이 말하고 있다.

사실 韓國政府의 中立宣言은 列強의 完全한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 英國公使가 말한것처럼 韓國皇帝는 局外中立의 宣言에 대하여 英國, 獨逸, 丁抹, 淸國의 회답을 얻은 사실을 가지고 韓國의 獨立不可侵을 승인한 것으로 誤認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5) 사실 日英同盟 등으로 국제정세가 日本側에 유리하고 19세기 列強의 侵略이라는 국제세력속에서 고독해진 韓國을 뒷받침해줄 強大國은 없었다. 그러기에 韓國은 드디어 「京城中立」이라는 것으로 바꾸기까지 하였지만 이보다 앞서는 것으로 참고삼아 韓國의 中立保障要請에 대한 러시아의 태도에 관하여 在露韓國公使와의 談話內容이 駐露日本公使로부터 小村外務大臣에게 보내진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6)

No.131 Korean Minister in st. Petersburg told 日下部 that he receiring an Imperial orader Concerning independence and ne-utraligation of Corea in case of war between Russia and Jap-an, Went to see prince Obolensky 10月21日 to talk on the matt-er, but prince having absolutely deneied enventuality of War Conversation dropped without entering into any details, Korean Minister also told 日下部 that neutrality of Corea is quite impraticable; even Switzerland seemed to have been incapable to obstruct intrusion of foreign troops engaged in war

이렇게 韓國의 局外中立宣言은 列強의 지지를 얻지 못하였다. 알-
한 韓國에 대하여 日本과 러시아의 감정을 사면서까지 도우려고
하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日帝는 列強으로부터 오는 中立宣言에
대한 回答內容을 把握하는데 온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다. 그
한 例를 본다면

敬啓者 由貴政府向俄国政府声明局外中立由該政府果有何等回答耶 本
使切願一覽 尙望 示 敬具⁷⁾

이는 1904년 2월 26일 駐韓日本公使林權助가 우리外部大臣에게
보내온 내용이다. 이는 戰爭當事國인 러시아의 回答이므로 日本側
이 回信內容을 알려고 한다 하더라도 日本이 취한 행위는 主權國
家에 대한 強迫임에 틀림없는 것이다. 이같은 日本側의 요청에
대해서 우리政府는 公式으로 러시아의 回答文을 접수하지 못했다고

답하였지만⁸⁾ 깊숙한 内部事情은 外交文書대로만 되었는지 확인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여러가지 秘密事項이 日本側에 새어나가는데 이같은 형식상의 回答文으로 처리될 수 없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1. 旧韓國外交文書卷 14 英案 2 P.618 文書番号 2549 露日開戰時의 中立宣言에 對한 轉謝
이에 관한 것으로 日本外交文書を 보면 (卷 37 의 1冊 P.313 文書番号 338) 通知公文의 原文은 漢文이며 프랑스公使館에서 仏文으로 번역된 것으로 추측했다. 아울러 英公使나 總稅務司도 다같이 위의 通知電報가 芝罘로부터 나온데 대하여 의심을 품고 이는 在芝罘外國領事의 손을 빌린 것으로 보고 있다.
2. 旧韓國外交文書 14 英案 2 P.618 文書番号 2550 露日開戰時의 中立宣言에 對한 轉謝에 對한 回謝
3. 旧韓國外交文書卷 21 義案 P.118 文書番号 271 大韓局外中立宣言에 對한 義政府訓飭佈達의件 및 文書番号 272 同上回答
4. 日本外交文書卷 37 第 1冊 P.314 文書番号 339 韓國中立問題 = 付我方 1 意見開示シ 差支ナキヤ 都合間合 1 件
5. 日本外交文書卷 37 第 1冊 P.318 文書番号 347 韓帝 1 時局 = 對スル 態度並 = 總稅務司 1 意見及 親日要人 1 動靜等報告 1 件
6. 日本外交文書卷 36 第 1冊 P.726 文書番号 702 韓國 1 中立保障

要請ニ対スル露国ノ態度ニ関シ在露韓国公使談話1件

7. 旧韓國外交書卷6 日案6 P.729 文書番號7852 局外中立宣言에 대한 露政府回答一覽要望

8. 旧韓國外交文書卷6 日案6 P.731 文書番號7855 中立宣言에 대한 露國覆文書未接回答

4. 俞吉潑의 中立論과 局外中立宣言內容과의 差異

우리나라에 있어서 中立이 무엇인가를 처음으로 論한 것은 俞吉潑이다.^① 비록 그 내용은 짧지만 이는 1885년에 발표된 것으로서 韓半島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列強의 각축을 예상하면서 유럽의 中立事例를 들고 우리가 취할 바를 논하고 있다. 그는 中立이란 萬國의 가운데에서 諸國戰爭에 關여하지 않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中立의 類型은 戰時中立과 恒久中立의 두가지라며 中立은 嚴兵守備하는 것이요, 이는 自保策을 강구하는 것이라 하였다.

이는 우리나라가 1904년 露日戰爭에 휩싸이지 않기 위해서 局外中立宣言한 것과 직접적인 關連성은 발견되지 않으나 우리의 安保와 自衛策의 일환으로서 취해진데에 連繫性을 지니고 있다. 이제 俞吉潑의 中立論을 간추려 보고 그와 유사한 논의도 추적해 보기로 한다.

俞吉潑은 그의 中立論에서 우리의 歴史的 地政學的인 위치를 논하고 淸國과의 긴밀한 關係유지를 역설하고 있다. 유럽에서

比利時 (페루시아 ?) 와 發佳利亞 (불가리아 ?) 등의 中立과 中立論이 나오게 된 이유는 유럽 大國들이 러시아의 南下防止와 自國의 安保에서 나온 것이다. 이로서 논한다면 우리나라는 亞洲의 咽喉로서 亞洲의 中立國이 되는 것은 실로 러시아의 南下防止에 좋은 계기라면서 諸大國이 相保하는 政略이 된다고 하였다. 그는 러시아의 國力을 논하면서 러시아는 中·亞의 諸小國을 유인하여 보호, 또는 獨立權등을 인정하라고 조약을 체결하고 血盪한 文書가 마르기도 전에 土地 人民을 병탐하는 無道之國이라 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디보스톡까지 시베리아 鐵道도 확장시켰는바 우리의 위협이 크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과거로부터 中國과 특수한 관계였다고 전제하고 中國과 친해야 된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美合衆國이 우리와 대단히 두터운관계로 원조가 가능하다고 하나 俞吉濶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美國은 海外의 먼 곳에 있어서 우리와 深重한 관계가 별로 없고 또 葛老約後 (몬로 독트린 ?) 부터 歐亞의 일에 간섭하지 않으므로 만약 우리가 급한즉 그들이 말로서는 助力이 가능하나 武器로 직접 원조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옛부터 千마디의 말보다 한개의 彈丸이 중요하다고 하였는바 美國은 通商國家로는 가능하나 우리가 급할 때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淸國은 우리와 오랜 友好關係의 국가이므로 원조가 가능하다. 日本은 우리의 內陸에 침투하여 무역, 漁採, 서울居留 등으로

로 우리의 피해가 크다. 현재로서는 그들의 힘이 약해 그정도이나 강해지면 침략할 것이라 예언하고 있다. 天下에 軍事力이 강한 국가는 모두가 自國의 利益을 도모하며 오늘 撤兵했다가 來日 다시 오고 있다. 만약 우리가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그들의 침략을 당할 것이요, 中國까지 患이 될 것이니 이는 이와 입술의 관계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中國과 협의하여 中立을 취하며 우리의 保守策을 강구하도록 우리 스스로 선언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中國으로 하여금 辦理케 함이 어떻겠는가, 이는 우리의 國益만이 아니라 中國의 利도 된다는 것이며 여러나라가 각각 相保하는 計策도 된다는 것이다.

유럽의 大國들도 러시아를 막기 위한 計略으로서 불가리아 등의 中立을 시킨 것이다. 지금 우리에도 그같은 시기가 왔으니 이때를 이용하여 中立을 취해보자는 것이다.

이상의 논거를 종합하면 러시아의 南下에 대한 위협과 장차 예상되는 日帝侵略을 막기 위해 中國의 힘을 빌어 中立을 취하자는 것으로 요약되는바 이는 駐日清國公使館 參贊官 黃遵憲의 지은 朝鮮策略의 내용과 흡사한 점을 보이고 있다. 즉 朝鮮策略에서 러시아의 南下를 막기 위하여 朝鮮은 「親中, 結日, 聯美」^② 즉 中國과 친하고 日本과 맺고 美國과 연해야 된다는 淸國側의 견해와 유사한 점을 보이기도 한다.

어떻든 俞의 中立論은 우리의 安全을 도모하자는데 초점이 있다. 이는 中國을 배경으로 하는 中立論이 강조되고 있으나 1904년

우리 政府가 선언한 局外中立은 美国 등 20세기 초의 強大國을
배경으로 하는 共同保障下에 우리가 独自の으로 中立宣言을 한 점
이 차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1. 俞吉潁 文錄 中立論

2. 修使記錄 P. 160 ~ 171

日本外交文書제 13 권 P. 389 ~ 394 에 게재된 朝鮮策略

六. 結 語

韓末의 中立化論은 外勢侵略過程에서 또 우리의 自衛를 위해서 제의되거나 宣言되었다. 이는 우리 國力의 약함을 그대로 투영해준 것이며 우리의 自主的인 改革과 外勢의 角逐 등으로 엇갈려 試鍊을 당하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준 것이다. 淸의 東侵東進政策, 日本의 韓半島와 滿洲侵略政策 러시아의 極東南下政策 속에서 韓半島가 차지하는 政治的 戰略的 要衝地인 때문에 列強侵略의 角逐場이 된 것이다. 이에 우리는 우리의 安全保障을 위해 局外中立이라는 方法을 취해 보았으나 列強의 침략은 이를 인정하기 보다는 오히려 侵略을 위해 伸縮性을 보이면서 對立相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中立化論의 제의 宣言된 것을 단계별로 보면 첫째 日帝의 韓國의 中立化企圖이다. 淸日의 角逐속에서 侵略方法의 하나로 먼저 外國에 의해서 먼저 제기된 것이다. 1894년 淸日情勢가 급박해질 때 日帝는 對韓侵略政策의 일환으로 內閣의 決議에 따라 韓國을 单独 保護라는 基本政策을 세워놓고 표면상으로는 淸日 共同保護 등의 해괴한 理論을 내세웠다. 이는 韓淸關係의 親密性을 감안한 日帝가 韓淸紐帶關係를 단절시키고 국제사회에서 고립시켜 놓은다음 對韓侵略에서 淸勢力을 견제하고 戰爭對象國을 淸國만으로 국한시켜 싸울 수 있도록 하려는데 있었다.

두째 獨立協會가 주장한 中立外交論이다. 韓國中立論과는 성격이 조금 다른 경우이다. 이는 淸日戰爭에서 체험한 것과 淸日戰後

戰勝한 日本을 러시아의 주도하에 三國干涉으로 약화시키며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國內政界의 동향을 보고 실망한 나머지 中立外交論을 주장한 것이다. 이는 國內政界가 列強勢力의 침투속에서 親淸, 親日, 親露傾向으로 變轉해가는 國運을 보고서 그같은 列強勢力에 휩싸이지 않으려는 自主的인 基本精神에서 나온 것이다.

세계 러시아가 제의한 韓國中立論이다. 淸日戰後 러시아는 三國干涉으로 日本勢力을 한때나마 위축시켰으나 滿洲地域과 韓半島地域을 놓고 日露間에 侵略의 對立相이 노골화하면서 러시아가 제의한 韓國中立論이다. 이는 日本勢力이 韓半島와 大陸方面으로 浸透 侵略하는 것을 막는 동시에 러시아는 滿洲와 韓半島까지 세력권으로 장악하려는 策略이었다.

이때 우리 國內政界는 親露派가 상당히 우세한 때였으며 露日協商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의되었다. 이는 日本側의 날카로운 반응과 反對立場에 부딪쳤으며 日本은 한걸음 나아가 러시아의 極東進出을 막기 위해서 滿洲中立化로 응수하였다. 결국 두 侵略者는 對峙의 對立로 맞서 協商의 결렬과 함께 戰爭으로 연결되었지만 당초부터 러시아의 제의는 韓半島와 滿洲地域을 단독으로 浸透 侵略하는 것이었다.

네째 韓國의 局外中立宣言이다. 露日協商이 결렬되고 開戰이 필연적인 사실로 되어가자 韓國은 露日戰爭에서 우리의 安全保障을 위해 局外中立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이는 日本側의 방해로 받았으며 日本側의 갖가지 방법에 의한 探索과 방해로 인하여 실패하

었다. 물론 우리의 局外中立을 지켜줄 日本이나 러시아도 아니었지만 우리는 国力이 약한 입장에서 自衛策의 方法으로 宣言하였으나 国力의 뒷받침이 없어서 불가능한 것이 되고 列強은 帝國主義侵略이라는 공동보조속에서 그저 관망하는 것이었다. 日帝는 韓國의 局外中立을 비웃으면서 오히려 露日戰爭에 대비한 韓日議定書를 강박하여 韓國을 戰爭에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韓國의 局外中立宣言은 戰爭에 있어서 제 3국이 취한 局外中立宣言과는 성질이 다르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韓國에 바로 日本과 러시아의 対象目的이기 때문에 局外中立으로서 성질상 성립될 수 없으면서 侵略対象地임을 분명히 밝히고 中立宣言의 妨害工作은 물론이요, 親日系 人物을 통해서 韓國政府의 동향을 수시로 探索하여 対応策을 강구해나갔다. 결국 局外中立宣言은 列強의 호응을 얻지 못한 속에서 戰爭으로 치달게 되고 결국 局外中立宣言은 效果를 걸우지 못하였다.

이래서 局外中立이 국가적으로 實効를 걸우지 못하자 最少限으로나마 희생을 주리고자 「京城中立」을 시도했으나 戰爭으로 인해 效果를 걸우지 못하였다. 한때 高宗은 韓國局外中立을 日帝가 승인 이행한다면 韓日議定書를 조인해 주겠다는 뜻까지 밝힌 점도 있었던 것이다.

다섯째 局外中立宣言과는 성격이 조금 다르나 淸日情勢가 급박해지자 仁川各國居留地會를 구성한 당해국가들은 生命財産保護目的으로 仁川港의 中立을 선언하려고 하였다. 이는 日本側의 軍事的인 行

動을 제약하고 방해하는 것이라는 강경한 태도에 부딪혔다. 이때 日本은 列強의 共同居留地라는 것을 감안하고 條件을 제시하여 各 國居留地會가 日本에 敵對視하지 않을 때 그곳을 보호적인 입장을 취하겠다고 하였으나 日本軍의 仁川上陸으로 사실상 戰地化하고 말았다.

仁川港中立은 1904년 3월에도 仁川各 國居留地會議員인 獨逸인 우올타氏에 의해 또다시 제의되었다. 그는 韓國은 韓日議定書에 의하여 日本과 同盟國이 되었으므로 仁川各 國居留地에 대해서는 淸日戰爭당시 上海와 같이 해탈라고 日本側에 요청하였다. 그러나 日本은 仁川各 國居留地를 局外中立地로 간주할 정당한 이유가 없고 또 日韓兩國의 利益에 위배되는 것이라면서 듣지 않았다.

또한 俞吉潑은 1885년에 中立論을 펴자고 주장했으나 역시 결과는 없었다. 그러나 列強의 세력 침투속에서 우리의 安保를 도모하는 方法論은 韓末 中立論과 연계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와같이 韓末의 中立化論은 性格上으로는 目的에서나 提議한 國家와 背景이 각각 다르나 기본적으로는 韓國이 外勢侵略을 감당할만한 国力이 약한데서 起因되며 實効를 견을 수가 없었다. 列強의 侵略對象地化하여 戰略上으로 중요한 地政學的인 점이 列強侵略속에서 시련을 겪었고 또 우리의 平和保障策도 效果를 견우지 못하였다.